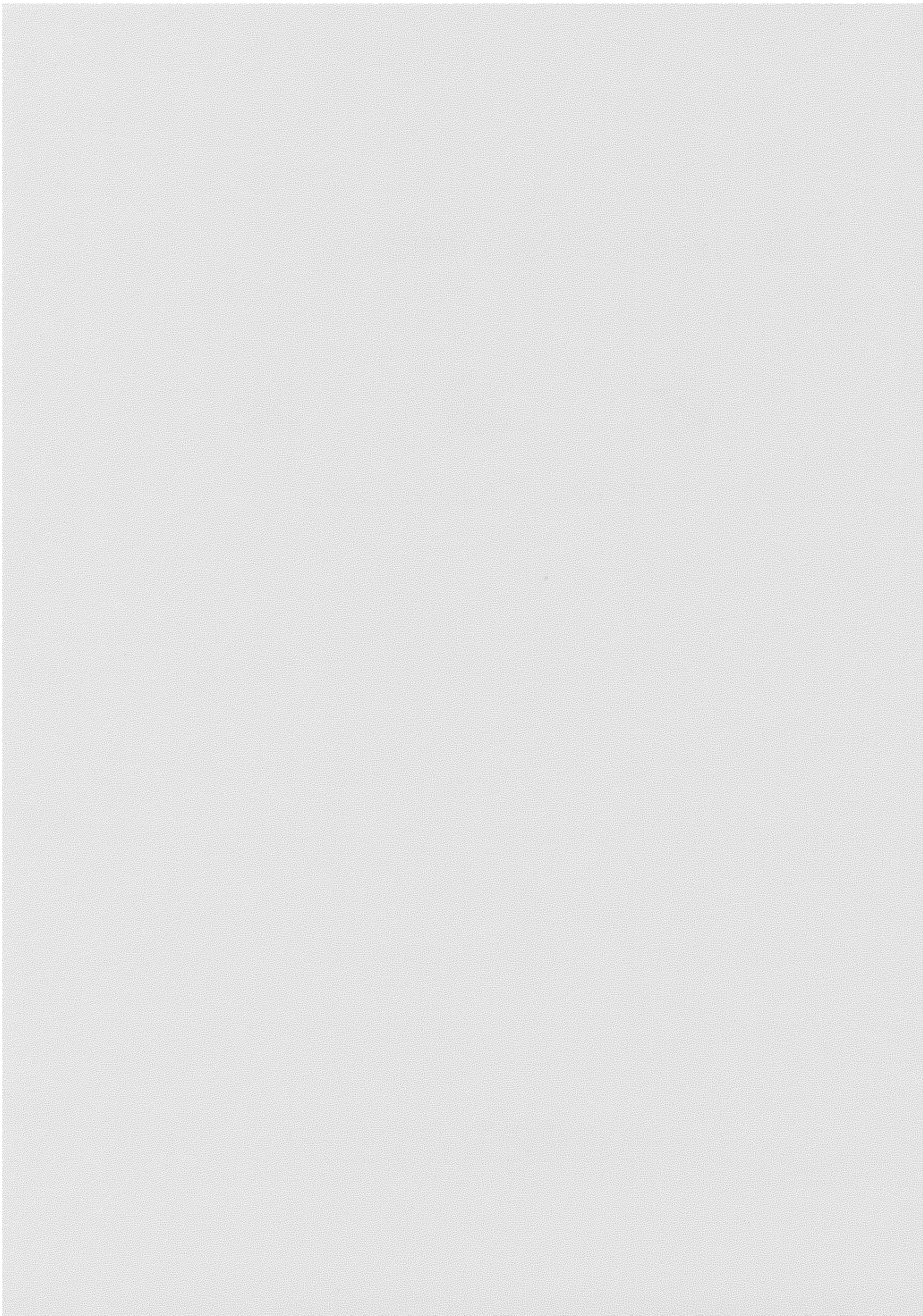


第151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 議 錄

(2003.3.25.~3.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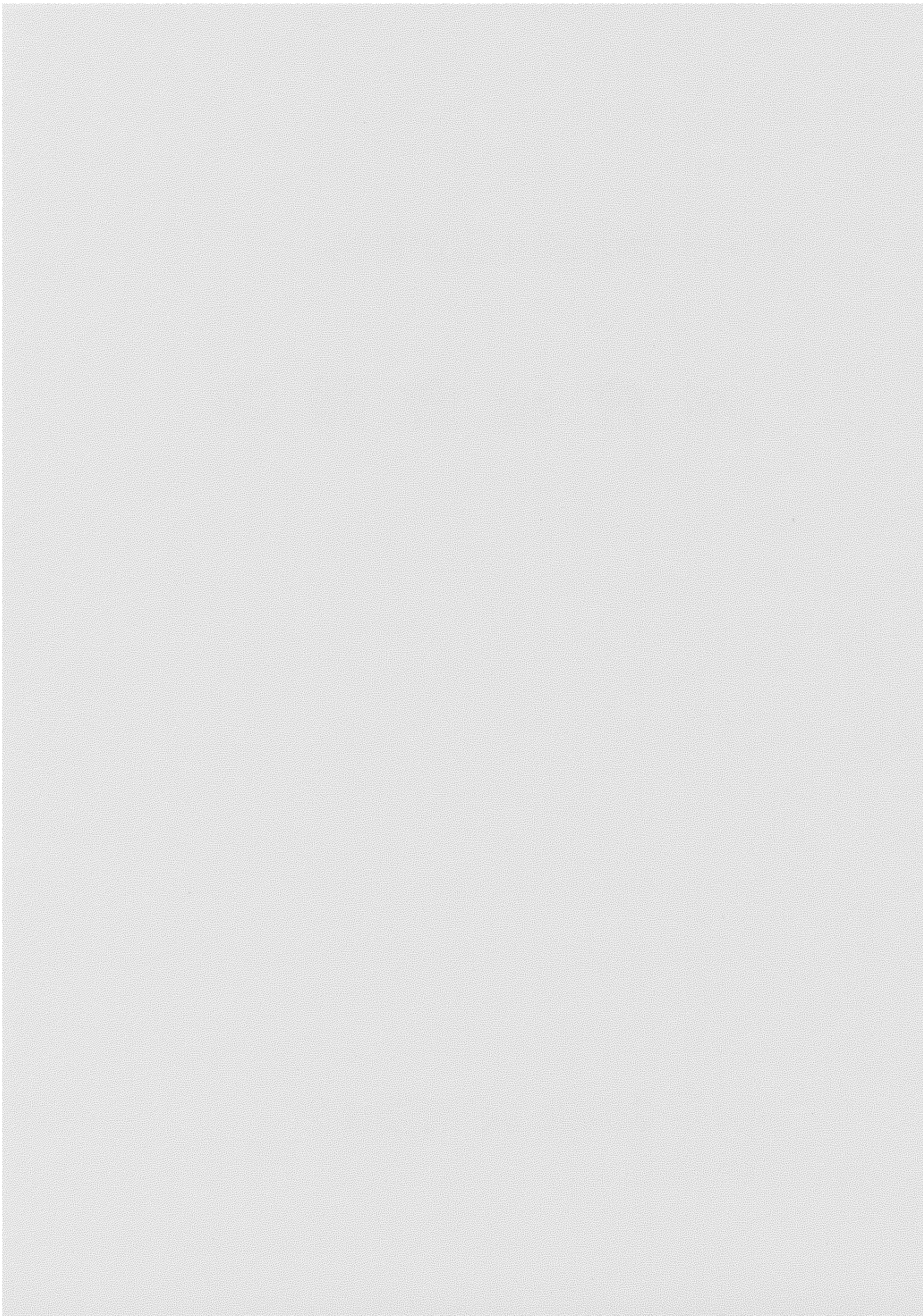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151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개회식	143
II. 제15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145
III. 제15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51
IV. 부 록	
1. 의사일정안	157
2.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	165
3.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	177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89
5.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계획안	197
6.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207
7.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15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3년 3월 25일 (화요일) 11시 00분

開會式順(第151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대한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김영구)

(11시 00분 개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 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 의사담당 김영구

지금부터 제15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11시 01분 폐식)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3년 3월 25일 (화요일) 11시 01분

議事日程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151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계획안
6.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건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151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계획안(교육감 제출)
7.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건(의장 제의)

(11시 01분 개의)

● 의장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과장께서는 학부모 봉사활동연수 특강 관계로, 이기석 평생교육체육과장님께서서는 대한적십자사 회의 참석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행청으로부터 임흥빈 중등교육

1. 경과보고

(11시 02분)

● 의장 이상일

그러면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발언대로 나눔)

● 의사과장 김용환

의사과장 김용환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3년 3월 1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교육위원회 집회 요구가 있어, 2003년 3월 17일 공고 제2003-3호로 제15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으며, 2003년 3월 15일 교육감으로부터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의회 제출안건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29일 제1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여 2003년 2월 3일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한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2003년 2월 14일 제20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어 2003년 2월 28일 충청북도조례 제2736호 및 제2737호로 공포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계획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이상일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51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1시 04분)

● 의장 이상일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1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산회 후에는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시겠으며, 3월 26일부터 3월 28일까지는 소위원회 활동과 의안관련 현장방문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며, 3월 29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151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3.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
(11시 05분)

● 의장 이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단재교육상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옴)

● 교육국장 반창남

교육국장 반창남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일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항상 충북교육을 걱정해 주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상일 의장님과 교육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충북교육비전 21 및 우리 교육청의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의거 충북학생상시상규칙의 제정 시

행으로 인하여 학생부문을 삭제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조의 시상부문 중 학생부문, 면학상, 충효상, 봉사상 부문을 삭제하고, 둘째, 안 제2조, 3조의 시상부문 중 학술상, 사도상, 공로상을 사도부문, 학술부문, 공로부문으로 변경하며, 셋째, 안 제7조제5항의 수상후보자를 12명 이내에서 부문별 수상후보자로 변경하며, 넷째, 안 제5조제2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15인 이내에서 9인 이상 15인 이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자리로 돌아감)

▶ 참 조 :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별첨 2)

(끝에 실음)

● 의장 이상일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4.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
- 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
계획안

(11시 08분)

● 의장 이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서서는 나오셔서 안건별로 각각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일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북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교육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 관한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 관한조례안입니다.

제정사유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기관의 권한 및 책

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등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임기관의 사무처리에 있어 법령준수는 물론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였고, 위법 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취소 및 정지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는 위임의 범위는 관련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정하거나 하부기관에 위임토록 한 업무를 교육장, 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각각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 관한조례안(별첨 3)

(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간 분할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을 연 5% 내지 8%에서 연 4% 내지 연 6%로, 5년간 분할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을 연 8%에서 연 6%로 각각 인하 조정하는 것이며,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율을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 15%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체기간에 따라 연 12%에서 연 15%까지 연체율을 차등화하고, 연체료를 부과하는 기간은 납기일로부터 60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사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장, 청소의 장, 시설관리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였던 것을 사용대상 소속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개정하여 관사사용료 면제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별첨 4)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계획안입니다.

변경이유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근

거한 것으로서, 잡종재산인 보은교육청 임야 및 대지 4만 3,306㎡는 보은군청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각하여도 교육에 직접적으로 지장이 없는 재산입니다.

폐교재산인 삼산초등학교동정분교 외 2교의 재산은 앞으로 교육에 활용계획이 없는 재산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공개경쟁을 거쳐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 참 조 :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계획안(별첨 4)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이상일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 의견

(11시 14분)

● 의장 이상일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 의견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에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

[제151회-제1차 본회의]

소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조건은 의장을 제외
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단재교육상조
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즉시 조
례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
다.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3월 29일 제2차 본회의
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5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김
남훈 위원님과 송대현 위원님께서 수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
다.

제15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이상일, 부의장 고규강,

위원 김남훈, 성영용, 송대현, 이기수,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12명

교육감 김천호, 부교육감 김용호, 교육국장 반창남,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실 신건환, 초등교육과 정무,
과학실업교육과 김겸,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총무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의사일정안(별첨 1)
- ▶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별첨 2)
- ▶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별첨 3)
-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별첨 4)
- ▶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계획안(별첨 5)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3년 3월 29일 (토요일) 11시 05분

議事日程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계획안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계획안(교육감 제출)

(11시 05분 개의)

● 의장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집행청으로부터 정무 초등교육과 장님께서 초등교사 임용시험 관련 회의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심사소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 조례심사소위원회 회부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보고되었으며,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 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7분)

● 의장 이상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소위원회 성영용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별로 각각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나옴)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성영용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성영용 교육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본 안건들은 지난 3월 15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3월 25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3차에 거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이미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기관의 권한 및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등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수임기관의 사무처리에 있어 법령 준수의 위법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취소 및 정지와 필요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임의 범위는 관련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정하거나 하부기관에 위임토록 한 업무를 교육장, 학교장, 직속기관장에게 각각 위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그 제정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조례안 제7조 권한위임사무별표1 중 제29호 각급 학교 감사에 관한 사항 근거법령을 초·중등교육법 제6조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7조제2호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추후 충청북도교육청자체감사규칙을 조속히 제정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 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별첨 6)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애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10년간 분할 납부 시 이자율을 연 5% 내지 8%에서 연 4% 내지 6%로, 5년간 분할 납부 시 이자율을 연 8%에서 연 6%로 각각 인하 조정하고,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율을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 15%에서 연체기간에 따라 연 12%에서 연 15%로 차등화하며, 연체료 부과기간을 납기일로부터 60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관사사용료 면제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사용대상 소속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사유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조문 해석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안 제52조 제1호 사용대상 소속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사용대상 공무원 및 그 소속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별첨 7)
(끝에 실음)

끝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의안심사와 적극적인 소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이상일

성영용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안전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을 조례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모두 침묵)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계획안

(11시 15분)

● 의장 이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3월 26일, 3월 27일 이틀간 현장을 방문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모두 침묵)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집행청에 몇 가지 간곡한 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미 언론보도를 통하여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난 3월 26일 이웃 도인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축구 꿈나무 중 8명의 고귀한 생명이 유명을 달리 하였으며, 17명은 크게 부상을 당하는 화재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위원 일동은 유명을 달리한 축구꿈나무들에게 머리숙여 진심으로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부상당한 꿈나무들이 하루속히 쾌유되기를 바라며, 가족들에게도 위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청에서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 학교

내 건물에서 숙식을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이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이번 기회에 화재 취약시설 전반에 걸쳐 철저한 조사 후에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함과 아울러, 학생들에 대한 화재예방 교육은 물론 화재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매년 반복되는 현상입니다만은 중국 대륙으로부터 날아드는 황사현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호흡기 질환, 안질 등 각종 질병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청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도내 모든 학교가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중 반복적으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집행청에서는 각급 학교에서 철저한 급식위생관리로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교육위원회에서는 추후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현장을 점검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제15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폐회)

0 출석위원 : 7명

- 의장 이상일, 부의장 고규강,
- 위원 김남훈, 성영용, 송대현, 이기수,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13명

- 교육감 김천호, 부교육감 김용호, 교육국장 반창남,
- 기획관리국장 이상길,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중등교육과장 임흥빈,
-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 이기석,
- 총무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별첨 6)
-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별첨 7)

제15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3. 4. .

의 장 이 상 일 李 相 一

위 원 김 남 훈 金 南 勳

위 원 송 대 현 宋 大 顯

의사국장 이 상 기 이 李 相 基 伊

議 事 日 程 (案)

第151回 忠淸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2003. 3. 25. ~ 3. 29.(5日間)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3월 25일(화) (11:00)	<input type="checkbox"/> 개 회 식 [제1차 본회의] 1. 제15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 기 : 2003. 3. 25. ~ 3. 29.(5일간) 2.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제안설명) 3.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제안설명)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제안설명) 5.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제안설명) 6.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input type="checkbox"/> 소위원회 활동 • 조례심사소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산 회	
3월 26일(수) ~ 3월 28일(금)	<input type="checkbox"/> 소위원회 활동 • 조례심사소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의안관련 현장방문	본회의 휴회
3월 29일(토) (11:00)	[제2차 본회의] 1.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 4.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input type="checkbox"/> 산 회 <input type="checkbox"/> 폐 회	

의안관련 현장방문 결과보고

1. 방문일시 : 2003. 3. 26.(수) 14:05 ~ 14:25
2. 방문현장 : 구)무극초등학교 사정분교장
3. 방문목적 : 폐지학교 매각에 따른 현장 확인
4. 방문위원 : 이상일 의장, 고규강 부의장, 김남훈, 성영용, 고규강 교육위원(5명)
5. 수행직원 : 의사담당, 손양희, 김종관(3명)
6. 방문결과

위원명	의 견	비고
이상일 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학교신설 요인 유무<교육장 : 없음> ◦ 설립당시 기부자가 있을 경우 기부자에 감사의 표시를 남겨야 함 - '문단은 학교 역사찾기'관련 표지석 설치시 기록예정 	
고규강 부의장	◦ 일반적으로 폐지학교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	
김남훈 위원	◦ 폐지학교 재산 매각은 감정가격 이상으로 매각 됨.	
성영용 위원	◦ 지역 환경이 좋음.	
송대현 위원	불참	
이기수 위원	불참	
진옥경 위원	◦ 매수 희망자는 ? <교육장 : 2명>	
종합의견	◦ 위원님 모두 매각에 찬성함	

7. 기타 사항

- 교육장 인사말씀
- 평당 130,000원 예상
- 혐오시설 등 주민이 반대하는 용도로는 매각 않을 계획임.
- 마을 이장이 참석하여 매각 찬성 의견 표시함.

의안관련 현장방문 사진



제151회(임시회)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계획안
<2003.3.26. 구 부곡초 사정분교장(폐지학교) 매각관련>

의안관련 현장방문 결과보고

1. 방문일시 : 2003. 3. 27.(목) 11:00 ~ 12:30
2. 방문현장 : 보은 삼산초 동정분교(폐교재산), 보은교육청 임야 및 대지
3. 방문목적 : 제151회(임사회) 의안(2003.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계획안)관련 현장방문
4. 방문위원 : 고규강 부의장, 김남훈, 송대현, 이기수, 진옥경 교육위원(5명)
5. 수행직원 : 의사과장, 의사담당, 임재혁(3명)
6. 방문결과

○ 삼산초 동정분교(폐교재산) 매각의 건

위원명	의 건	비고
고규강 부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매입 의향이 있는 자가 있는지와 평당 가격은? · 한국비림박물관 원장이 매입의사가 있으며, 평당가격은 2만원 정도로 추정됨 - 동정분교 옆 전·답 평당가격은 ? · 평당 3~4만원 정도하고 있음 	
김남훈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각방법은? · 경쟁입찰을 할 예정임 	
송대현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교육목적으로의 활용 가능성이 없다고 했는데 ? · 보은에는 20여 곳의 폐교재산이 있으며, 현 위치보다 문화 자료 등의 교육적 활용가치로 더 좋은 데가 많이 있음 - 건물 건축년도는 ? · 건축한 지 30년 되었음 	
이기수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시지가와 매각가격의 차이는 ? · 공시지가는 1억 6천만원이나 실제 매각 시는 최소 2억 5천만원 이상은 될 것으로 추정됨 - 현재 년) 임대료 수입은 ? · 720만원임 	
진옥경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로 매매 시가 조사를 해 보았는지 ? · 매각이 확정되면 할 예정으로 있음 - 로울러경기장 건립 예산은 ? · 22억 6천만원으로 도교육청, 보은교육청, 보은군청에서 부담할 예정임 	

○ 보은교육청 임야 및 대지 매각의 건

위원명	의 건	비고
고규강 부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울러경기장 건립예산이 법적으로 확정되어 있지도 않은데 교육재산을 매각하여 재원을 마련하기 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됨 	
김남훈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울러경기장 건립예산은 확정된 것인지? · 확정되지 않았음 - 심의도 안된 사항이 현재 언론에는 다 된 것인 양(매각된 것 같이) 보도되고 있음 - 군계획과 관계되는 중요한 안건이 사전에 교육위원과 협의를 한 사실이 없었음 - 로울러경기장 건립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됨 	
이기수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각 가격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 2억 5천~3억원 정도로 추정됨 -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등 협조도 중요하지만 먼저 교육재산을 보호하고 아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됨 	

7. 기타 협의사항 : 없음.

의안관련 현장방문 사진



제151회(임시회)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계획안
〈2003.3.27. 삼산초 동정분교장(폐지학교) 매각관련〉



제151회(임시회)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계획안
〈2003.3.27. 모은교육청 임야 및 대지 매각관련〉

(별첨 2)

의안번호	제 151-1 호
의결 연월일	2003년 월 일 (제 회)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연월일	2003년 3월 14일

단체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1 - 1
----------	---------

제출년월일 : 2003. 3. 14.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개정 이유

- 우리교육청의 “2003 주요업무계획”에 의거 「충북학생상」 실천수범학생 표창계획에 따라 단체교육상 학생부문을 삭제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함.

주요골자

- 시상부문중 학생부문(면학상, 충효상, 봉사상) 삭제(안 제2조, 제3조, 별표).
- 시상부문중 학술상, 사도상, 공로상을 사도부문, 학술부문, 공로부문으로 변경(안 제2조, 제3조, 별표, 별지제1~3호).
- 수상후보자 12명 이내를 부문별 수상후보자로 변경(안 제7조 제5항)
-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15인 이내에서 9인 이상 15인 이내로 변경(안 제5조 제2항)

개정근거

- 충북학생상시상규칙 (규칙 제456호. 2000. 12. 15)

개정조례안 : 붙임

참고사항

- 기타 : 입법예고(2002.11.29~12.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

단재교육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단재교육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교육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하여 단재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을 시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부문) 교육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도부문
2. 학술부문
3. 공로부문

제3조(수상대상자) ①교육상의 수상대상자는 충청북도 교육발전에 지대한 업적이거나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사도부문 : 충청북도내 각급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2. 학술부문 : 충청북도내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 교직원, 교육행정기관(직속기관 포함) 직원 및 일반인
3. 공로부문 : 충청북도내 교육행정기관(직속기관 포함) 직원, 일반인, 단체 및 기관

②한번 교육상을 받은 자는 다시 받을 수 없다.

제4조(수상대상자 추천) ①교육상 수상대상자는 교육장, 고등학교장, 직속기관장, 본청 국장급 이상의 추천이 있는 자로 한다.

②교육상 수상대상자를 추천할 때는 매년 9월 말일까지 다음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 별지 제1호 서식
2. 추천조서 : 별지 제2호 서식
3. 수상후보자의 공적 또는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①교육상 수상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단재교육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감이 교육상 수상후보자 추천 마감 후 9인 이상 15인 이내로 위촉하며, 교육상 시상 종료 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제1항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④간사는 충청북도교육청 초등인사담당장학관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수상후보자 심사) ①위원회에 교육상 수상후보자를 부문별로 심사하기 위하여 분과 심사부를 둔다.

②분과 심사부의 위원은 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분과 심사부를 통할하는 심사부장을 두되 당해 심사위원이 호선한다.

④분과 심사부에서는 수상후보자를 별표의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

⑤위원회는 부문별 수상후보자를 선정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제8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부문별로 분과심사를 거쳐 위원회의 심사 후, 교육감이 결정한다.

제9조(시상) ①교육상은 매년 1회 교육감이 지정하는 날에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②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제10조(실비변상) 교육감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상후보자 공적심사 기준(제7조 관련)

부 문	공 적 심 사 기 준
사도부문	○ 학생교육을 위해 헌신한 공적, 타 교원의 귀감 ○ 교육 경영능력이 뛰어나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적
학술부문	○ 교육에 관한 학문적 연구 또는 논문이 실제 교육현장에 공헌 ○ 교육내의 부문에서 학술·예술·문화활동 및 저서 간행으로 사회적 공헌
공로부문	○ 충청북도내 학교 교육의 발전을 위한 지원 실적 ○ 충청북도 교육 발전을 위해 지원한 공적

【별지 제1호 서식】

단재교육상 추천서

○ ○ 부 문

성 명 :

생년월일 :

근 무 처 :

직 위 :

주 소 :

위 사람을 년도 단재교육상 수상 대상으로 추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권자(기관명, 직, 성명)

직(사)인

충청북도교육감 귀하

단재교육상 추천조서

○ ○ 부 문

사 진
(반명함판)

성 명 :

생년월일 :

근 무 처 :

직 위 :

주 소 :

1. 학 력

기 간	학 력	비 고

2. 경 력

기 간	경 력	비 고

3. 실적 및 공적개요

기 간	공 적	비 고

【별지 제3호 서식】

단재교육상 심사조서

○ ○ 부 문

심사위원

_____ (인)

_____ (인)

대상자명	근 무 처	심 사 의 건	결 과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발전에 공헌한	자와 타의 모범이 된 학생에 대하여 단재교육상 (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을 시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발전에 공헌한자	(삭 제)에 …………… …………… ……………
제2조(시상부문)	1. 교원 및 일반부문 가. 학술상 나. 사도상 다. 공로상 2. 학생부문 가. 면학상, 나. 충효상, 다. 봉사상	제2조(시상부문) 교육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삭제) 1. 사도부문 2. 학술부문 3. 공로부문 2.(삭제) 가. 면학상, 나. 충효상, 다. 봉사상 (삭제)	
제3조(수상대상자) ①교육상의 수상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교원 및 일반부문 가. 학술상 : 충청북도내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교직원,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의 직원 및 일반인 나. 사도상 : 충청북도내 각급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다. 공로상 : 충청북도내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 일반인, 단체 및 기관 2. 학생부문 : 충청북도내 각급학교 학생 ③수상대상자를 심사하는 기준은 별지 1과 같다.	제3조(수상대상자) ①교육상의 수상대상자는 충청북도 교육발전에 지대한 업적이나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삭제) 1. 사도부문 : 충청북도내 각급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2. 학술부문 : 충청북도내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 교직원, 교육행정기관(직속기관 포함) 직원 및 일반인 3. 공로부문 : 충청북도내 교육행정기관(직속기관 포함) 직원, 일반인, 단체 및 기관 2. (삭제) ③ (삭제)	
제8조(추천 및 심사)	⑤교육상 수상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추천권자의 추천이 있는자로 한다. 1. 교원 및 일반부문 : 교육장, 고등학교장, 본청국장급이상 2. 학생부문 : 교육장, 고등학교장 ⑥교육상 수상대상자를 추천할 때는 매년 9월 말일까지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별지 제2호 서식] 2. 추천조서 [별지 제3호 서식]	제4조(수상대상자 추천)	①교육상 수상대상자는 교육장, 고등학교장, 직속기관장, 본청 국장급 이상의 추천이 있는 자로 한다. ②…………… 말일까지 다음 서류를 …………… 한다. 1. 추천서 : 별지 제1호 서식 2. 추천조서 : 별지 제2호 서식 3. 수상후보자의 공적 또는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교육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단재교육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5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감이 교육상 수상대상자 추천 마감후 15인 이내로 위촉하며, 부교육감은 당연직 위원이고 교육상 시상 종료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p> <p>②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된다.</p> <p>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p>	<p>제4조 (삭제)</p> <p>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①교육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단재교육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감이 교육상 수상후 보자 추천 마감 후 9인 이상 15인 이내로 위촉하며, 교육상 시상 종료 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p> <p>③위원회에 ④..... 회무를 총괄한다.</p>
<p>제6조(회의 및 의사)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제1항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p>	<p>제6조(위원회 운영) ①..... ②.....의 결한다.(이하삭제).....</p>
<p>제7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1인의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p>	<p>제7조 (삭제) ③.....간사 1인을 둔다. ④간사는 충청북도교육청 초등인사담당장학관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p>
<p>제8조(추천 및 심사) ①위원회에 교육상 수상대상자를 부문별로 심사하기 위하여 분과 심사부를 둔다. ②분과 심사부의 위원은 심사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분과 심사부에 심사부장을 두되 당해 심사위원이 호선한다. ④심사부장은 심사부를 통할한다.</p>	<p>제7조(수상후보자 심사) ①.....수상후보자를..... ②..... ③분과 심사부를 통할하는 심사부장을 두되 당해 심사위원이 호선한다. ④ (삭제) ④분과 심사부에서는 수상후보자를 별표의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 ⑤위원회는 부문별 수상후보자를 선정하여.....</p>
<p>제8조의 2(수상후보자 선정) ①각 심사부에서는 각 상별로 수상대상자를 심사하여 2인 이내로 선정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심사조서를 작성 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수상후보자를 12인 이내로 선정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한다.</p>	<p>.....</p>

현행	개정(안)
<p>【별지 1】 수상대상자 공적심사 기준 상별 : 공적심사 사도상 ○ 학생교육을 위해 헌신, 타 교원의 귀감이 됨</p> <p>학술상 ○ 교육에 관한 학문적 연구 또는 논문이 실제 교육에 공헌 ○ <u>교육에 관한 저서 간행으로 교육 현장에 공헌</u> ○ <u>교원 및 일반직, 교육전문직으로서</u> 교육의 부문에서 학술 또는 예술 문화활동 및 저서 간행으로 사회적 공헌</p> <p>공로상 ○ 충청북도내 학교 교육의 발전을 위한 <u>지원 및 공헌이 현저</u></p> <p>면학상 ○ 면학에 힘써 학업성적이 뛰어나고 품행이 방정하며 타의 모범 ○ 예·체능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둠 ○ 과학, 기술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둠</p> <p>충효상 ○ 투철한 애국심 ○ 효행이 지극</p> <p>봉사상 ○ 반공의 생활화 ○ 협동, 봉사, 준법, 선행</p>	<p>【별표】 수상후보자 공적심사 기준(제7조와 관련) 부 문 : 공적심사기준 사도부문 ○ ○ <u>교육 경영능력이 뛰어나 교육발전에 기여</u></p> <p>한 공적 학술부문 ○ ○ (삭제) ○ 교육내외 부문에서 학술·예술·문화활동 및 저서 간행으로 사회적 공헌</p> <p>공로부문 ○ 충청북도내 학교교육 발전을 위한 <u>지원실적</u> ○ <u>충청북도 교육발전을 위해 지원한 공적</u></p> <p>면학상 및 기준(삭제)</p> <p>충효상 및 기준(삭제)</p> <p>봉사상 및 기준(삭제)</p>
<p>【별지 2】 단재교육상 수상대상자 추천서 ○○부 ○○상 추천자 (인)</p>	<p>【별지 제1호 서식】 단재교육상 추천서 ○○부문 추천권자(기관명, 직위, 성명) 직(사)인 충청북도교육감 귀하</p>
<p>【별지 3】 단재교육상 수상대상자 추천조서 ○○부 ○○상</p>	<p>【별지 제2호 서식】 단재교육상 추천조서 ○○부문</p>
<p>【별지 3】 단재교육상 심사조서 ○○부 ○○상</p>	<p>【별지 제3호 서식】 단재교육상 심사조서 ○○부문</p>

(별첨 3)

의안번호	제 151-2 호
의결 연월일	2003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연월일	2003년 3 월 15 일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151-2
----------	-------

제출년월일 : 2003. 3. 14.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기관의 권한 및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수임기관은 수임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함(안 제2조).
- 교육감은 이 조례로 위임한 사무의 처리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교육감은 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4조).
-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위임사무 처리에 관하여 수시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각각 별표1, 별표2, 별표3으로 함(안 제7조).

제정근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6626호, 2002. 1. 26)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7714호, 2002. 8. 14)
- 지방자치법(법률 제6669호, 2002. 3. 25)

제정조례안 : 붙임

참고사항

- 기 타 : 입법예고('03.01.30. ~ 02.18.)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기관의 권한 및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무의 처리) 수임기관은 수임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지휘·감독)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교육감의 한시적인 사전승인이나 협의의 요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권한의 위임에 따른 감사) 교육감은 위임사무의 처리에 있어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의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제7조(권한위임 사무)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7조 관련)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1	<p>○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다음 사항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p> <p>가.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p> <p>나.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p> <p>다. 사회교육 기타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p> <p>라.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p> <p>마.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p> <p>바.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p> <p>사.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p> <p>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p> <p>자. 예산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p> <p>차. 각급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p>	<p>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7조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2조</p>	
2	<p>○각급학교의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p>	<p>초·중등교육법 제7조</p>	
3	<p>○공립 각급학교 교원의 정원 배정</p>	<p>지방교육행정기관및각급학교에두는 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3조</p>	
4	<p>○평생교육 운영 및 시설에 관한 다음의 사항</p> <p>가. 평생교육 운영 지도</p> <p>나.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 수리</p> <p>다.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설·폐 신고 수리</p> <p>라.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설·폐 신고 수리</p>	<p>평생교육법 제12조제3항</p> <p>동법 제20조제1항</p> <p>동법 제23조제2항</p> <p>동법 제24조제3항</p>	

	<p>마.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보고 수리</p> <p>바.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설·폐 신고 수리</p> <p>사.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설·폐 신고 수리</p> <p>아.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및 운영 정지 등 행정처분</p> <p>자. 청문</p> <p>차. 과태료 부과 징수</p>	<p>동법 제25조제3항</p> <p>동법 제26조제3항</p> <p>동법 제27조제3항</p> <p>동법 제29조</p> <p>동법 제30조</p> <p>동법 제32조</p>
5	○지역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을 말한다.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일반직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별정직 6급상당 이하 지방공무원의 관내전보·임지지정·겸임·휴직·복직·직위해제·파견·의원면직·퇴직·대우공무원선발·시보임용기간 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에의 임용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6	○공립 각급학교 일반직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관내전보·임지지정·겸임·휴직(6월이상)·복직(6월이상 휴직)·직위해제·파견·퇴직·대우공무원 선발·시보임용기간 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에의 임용	동법 제6조제2항
7	○지역교육청·소속기관·공립 각급학교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임용 (단,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 제외)	동법 제6조제2항
8	○지역교육청 인사위원회 설치·운영	동법 제7조
9	○지역교육청 및 소속기관 지방공무원의 호봉재획정·정기승급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10	○지역교육청 및 소속기관 지방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 허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2조제7항

11	○지역교육청 및 소속기관 6급(상당)이하 지방 공무원의 겸직허가	동조례 제26조
12	○소속기관·공립 각급학교 공인의 교부 및 등록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 인조례 제12조
13	○각급학교의 학급 배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
14	○각급학교의 학생수용계획 수립	동법시행령 제52조
15	○사립의 유치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의 설립 ·폐지·변경 인가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
16	○각급학교의 학칙 제정·변경 인가 (단, 사립 초 ·중학교의 학칙 제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	동법 제8조
17	○중학교이하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사 립학교 경영자 포함)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과 다음의 사항 가. 법인의 이사회 소집 승인 나. 법인의 임원 취·해임 승인 다. 법인의 기본재산 매도·증여·교환·용 도변경 및 담보허가 또는 신고 수리 라. 법인의 예산·결산 수리 마. 법인의 수익사업의 정지명령 바. 법인의 보고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사. 교원의 임면에 관한 보고 수리 및 해직 또는 징계 요구 아. 교육에 관한 보고·조사 등에 관한 사항 자. 과태료 부과 징수	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 동법 제17조제4항 동법 제20조제2항 동법 제28조제1항 동법 제31조 동법 제46조 동법 제48조 동법 제54조 동법 제70조 동법 제74조
18	○사립의 중학교이하 각급학교의 보조금 보조 결정 및 정산	동법 제43조

19	<p>○사학기관의 재무와 회계에 관한 다음의 사항</p> <p>· 가. 법인의 차입 허가</p> <p>· 나. 법인의 적립금 적립 및 사용에 관한 사항</p> <p>· 다. 법인의 증자보고 수리</p>	<p>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8조제2항</p> <p>동규칙 제22조의2</p> <p>동규칙 제45조</p>
20	<p>○중학교이하 사립학교유지법인 및 중학교이하 사립학교의 직인 등록 관리</p>	<p>학교법인및사립학교직인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p>
21	<p>○소속 도서관 시설 사용에 관한 다음의 사항</p> <p>· 가. 사용료 징수액 승인</p> <p>· 나. 열람시간 조정 승인</p> <p>· 다. 휴관일 조정 승인</p>	<p>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 관한조례 제11조제2항</p> <p>동조례 제12조제1항</p> <p>동조례 제13조제1항</p>
22	<p>○소속 학생회관 시설 사용에 관한 다음의 사항</p> <p>· 가. 정기휴관일 승인</p> <p>· 나. 사용료 승인</p> <p>· 다. 사용료 감면을 승인</p>	<p>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 관한조례 제23조제1항</p> <p>동조례 제26조</p> <p>동조례 제27조제2항</p>
23	<p>○소속 야영장 시설 사용료 징수액 승인</p>	<p>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 관한조례 제33조제2항</p>
24	<p>○지역교육청 및 산하기관의 동종·동형의 차량 교체·교환 승인</p>	<p>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소관 관용차량관리규칙 제9조 및 제10조</p>
25	<p>○지역교육청 및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p>	<p>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제3조제1항</p>

26	○공립 각급학교의 학교회계 전출금 교부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 규칙 제10조	
27	○관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다음의 사항 가. 폐교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특례 나. 영구시설물의 축조에 관한 사항 다. 시정명령 등 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자문 마.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에 관한 사항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제5조 동법 제6조 동법 제7조 동법 제8조 동법 제9조	
28	○각급학교의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 등과 관련된 사항 나. 학교시설의 건축 등과 관련된 사항 다.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취소 등과 관련된 사항 라. 청문 마. 감독 등과 관련된 사항 바. 준공검사 등과 관련된 사항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 제11호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동법 제5조의2 동법 제11조 동법 제11조의2 동법 제12조 동법 제13조	
29	○각급학교 감사에 관한 사항	초·중등교육법 제6조	

[별표 2]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7조 관련)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1	○일반직 6급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휴직(6월미만)·복직(6월미만 휴직)·의원면직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2	○소속 지방공무원의 호봉재확정·정기승급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3	○소속 지방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허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2조제7항	
4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 허가	동조례 제26조	
5	○공립 중·고등학교의 학생 학비 감면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 관한규칙 제3조제1항	
6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제3조제1항	

[별표 3]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7조 관련)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1	○일반직 6급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휴직(6월미만)·복직(6월미만 휴직)·의원면직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2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보직부여	동법 제6조제2항	
3	○소속 지방공무원의 호봉재획정·정기승급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4	○소속 지방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허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2조제7항	
5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 허가 (기관장 제외)	동조례 제26조	
6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 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제3 조제1항	

(별첨 4)

의안번호	제 151-3 호
의결 연월일	2003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연월일	2003년 3월 15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1-3
----------	-------

제출년월일 : 2003. 3 . 15.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간 분할 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연 5내지 8퍼센트에서 연 4내지 6퍼센트로, 5년간 분할 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연 8퍼센트에서 연 6퍼센트로 각각 인하 조정함(안 제22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 하는 경우의 연체료율을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 15퍼센트로 하던것을, 앞으로는 연체기간에 따라 연 12퍼센트에서 연 15퍼센트까지로 연체료율을 차등화하고, 연체료를 부과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8조제1항 및 제2항).
- 관사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장, 청·소의 장, 시설관리사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서 「사용대상 소속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함(안 제52조제1호).

개정근거

-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7788호, 2002. 11. 29.)
-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 시달(행정자치부, 2002. 12. 26.)

개정조례안 :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5퍼센트의 이자”를 “연 4퍼센트의 이자”로 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3항중 “연 8퍼센트의 이자”를 “연 6퍼센트의 이자”로 한다.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 연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 : 연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 : 연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연 15퍼센트

제2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의한 연체료부과 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로부터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5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용대상 소속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대부료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 ③(매각대금의 연체료 부과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①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u>5퍼센트의 이자</u>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1.~4. (생략)</p> <p>②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u>연 8퍼센트의 이자</u>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3. (생략)</p> <p>③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u>연 8퍼센트의 이자</u>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5. (생략)</p> <p>④ (생략)</p>	<p>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①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u>연 4퍼센트의 이자</u>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1.~4. (현행과 같음)</p> <p>②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u>연 6퍼센트의 이자</u>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3. (현행과 같음)</p> <p>③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u>연 6퍼센트의 이자</u>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5.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①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u>연 4퍼센트의 이자</u>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1.~4. (현행과 같음)</p> <p>②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u>연 6퍼센트의 이자</u>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3. (현행과 같음)</p> <p>③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u>연 6퍼센트의 이자</u>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5.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제28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하며,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제28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1. 연체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 : 연 12퍼센트</p> <p>2. 연체기간이 1월이상 3월미만인 경우 : 연 13퍼센트</p>	

현행	개정안
<p><신 설></p> <p>② (생 략)</p> <p>제52조(사용료의 면제) (생 략)</p> <p>1. <u>교육감, 부교육감, 교육장, 청·소의 장, 시설관리사가 직접사용하는 경우</u></p> <p>2.~4. (생 략)</p>	<p>3. <u>연체기간이 3월이상 6월미만인 경우: 연 14퍼센트</u></p> <p>4. <u>연체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연 15퍼센트</u></p> <p>②제1항에 의한 연체료부과 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로부터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p>제52조(사용료의 면제) (현행과 같음)</p> <p>1. <u>사용대상 소속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u></p> <p>2.~4. (현행과 같음)</p>

(별첨 5)

의안번호	제 151-4 호
의 결 연 월 일	2003년 월 일 (제 회)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 연 출 월 일	2003년 3월 11일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151-4
----------	-------

제출년월일 : 2003. 3. 15.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사유

공유재산의 처분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처분

기관별	처분재산명	소재지번	구분	수량 (㎡)	대장가격 (천원)	비 고
보 은 교육청	보은교육청 (임야및대지)	보은읍 장신리 68-1외 1필지	토지	43,306	157,524	
		수한면 동정리 20-1외 5필지	토지	9,776	63,874	
	삼 산 초 동정분교 (폐교재산)	수한면 동정리 20-1외 1필지	건물	1,393.3	65,865	
		" 동정리 20-1	공작물	5식	31,531	
음 성 교육청	무 극 초 사정분교 (폐교재산)	음성읍사정리949외1필지	토지	11,673	71,672	
		음성읍 사정리 949	건물	577.33	68,318	
		음성읍 사정리 949	입목죽	10본	153	

3. 제안근거

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나.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붙임 : 토지, 건물 처분 배치도 5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계획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총괄표

(단위 : m²,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 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매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환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	토지								
		건물								
		기타								
처 분	계	토지	3	64,755.00	293,070			3	64,755.00	293,070
		건물	2	1,970.63	134,183			2	1,970.63	134,183
		기타	2	5식,10본	31,684			2	5식,10본	31,684
	4. 매각	토지	3	64,755.00	293,070			3	64,755.00	293,070
		건물	2	1,970.63	134,183			2	1,970.63	134,183
		기타	2	5식,10본	31,684			2	5식,10본	31,684
	5. 양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	토지								
		건물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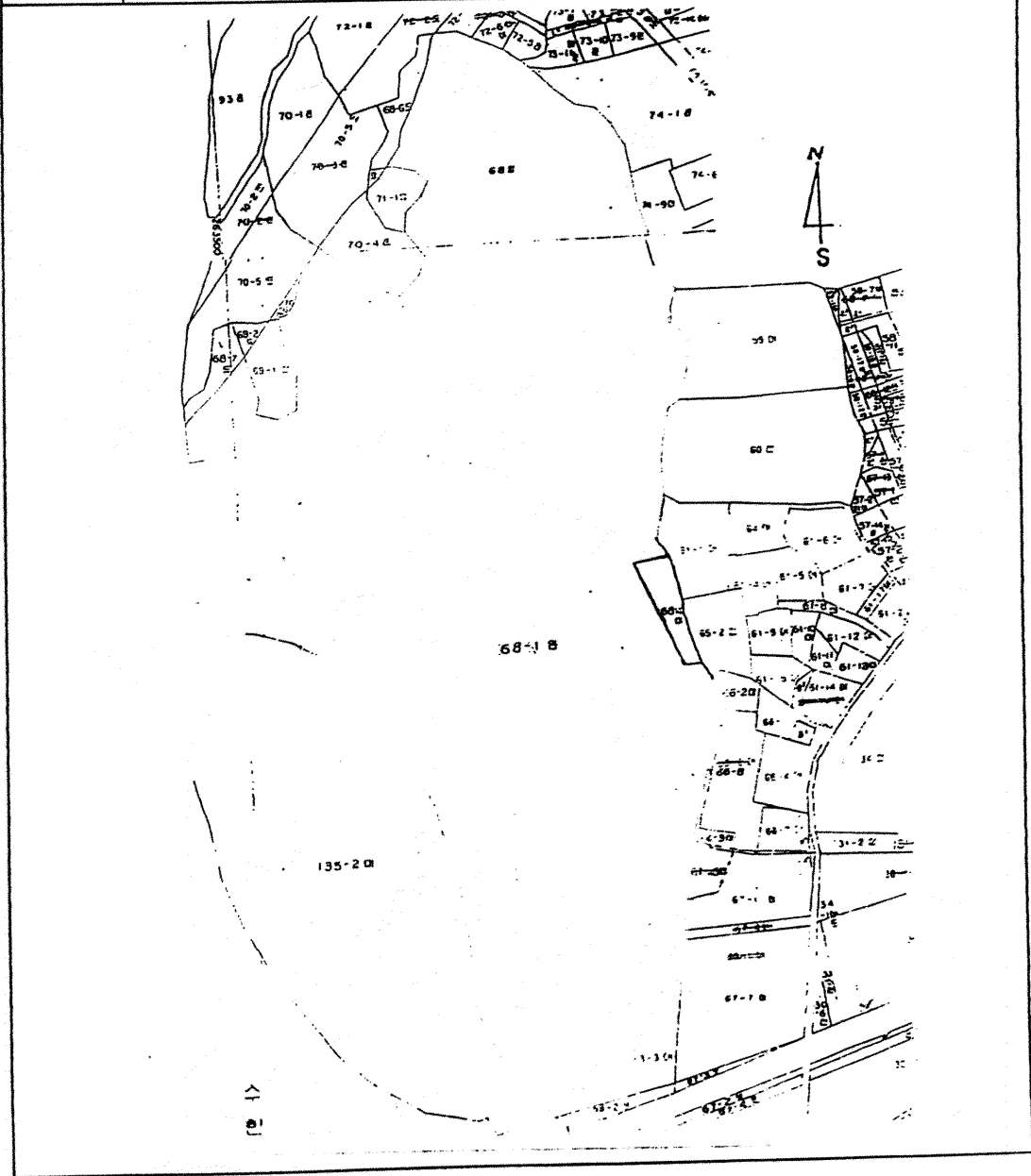
처분대상 재산목록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액	처 분 시 기	처 분 사 유	매 수 희망자	비고
	기관명	구 분	소재지번	수 량					
1	보은 교육청	토지	보은읍 장신리 68-1외1필지	43,306.00	157,524	상반기	교육환경개선사업 재원확보	보은군수	1쪽
2	삼산초 동정분교	토지	수한면 동정리 20-1외5필지	9,776.00	63,874	상반기	교육환경개선사업 재원확보	수한면 동정리 허 유	2쪽
		건물	수한면 동정리 20-1외1필지	1,393.30	65,865				3쪽
		공작물	수한면 동정리 20-1	5식	31,531				
3	무극초 사정분교	토지	음성읍 사정리 949외1필지	11,673.00	71,672	상반기	교육환경개선사업 재원확보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최병인 음성읍 사정리 이원희	4쪽
		건물	음성읍 사정리 949	577.33	68,318				5쪽
		입목죽	음성읍 사정리 949	10본	153				
계	3건	토지		64,755.00	293,070				
		건물		1,970.63	134,183				
		공작물		5식	31,531				
		입목죽		10본	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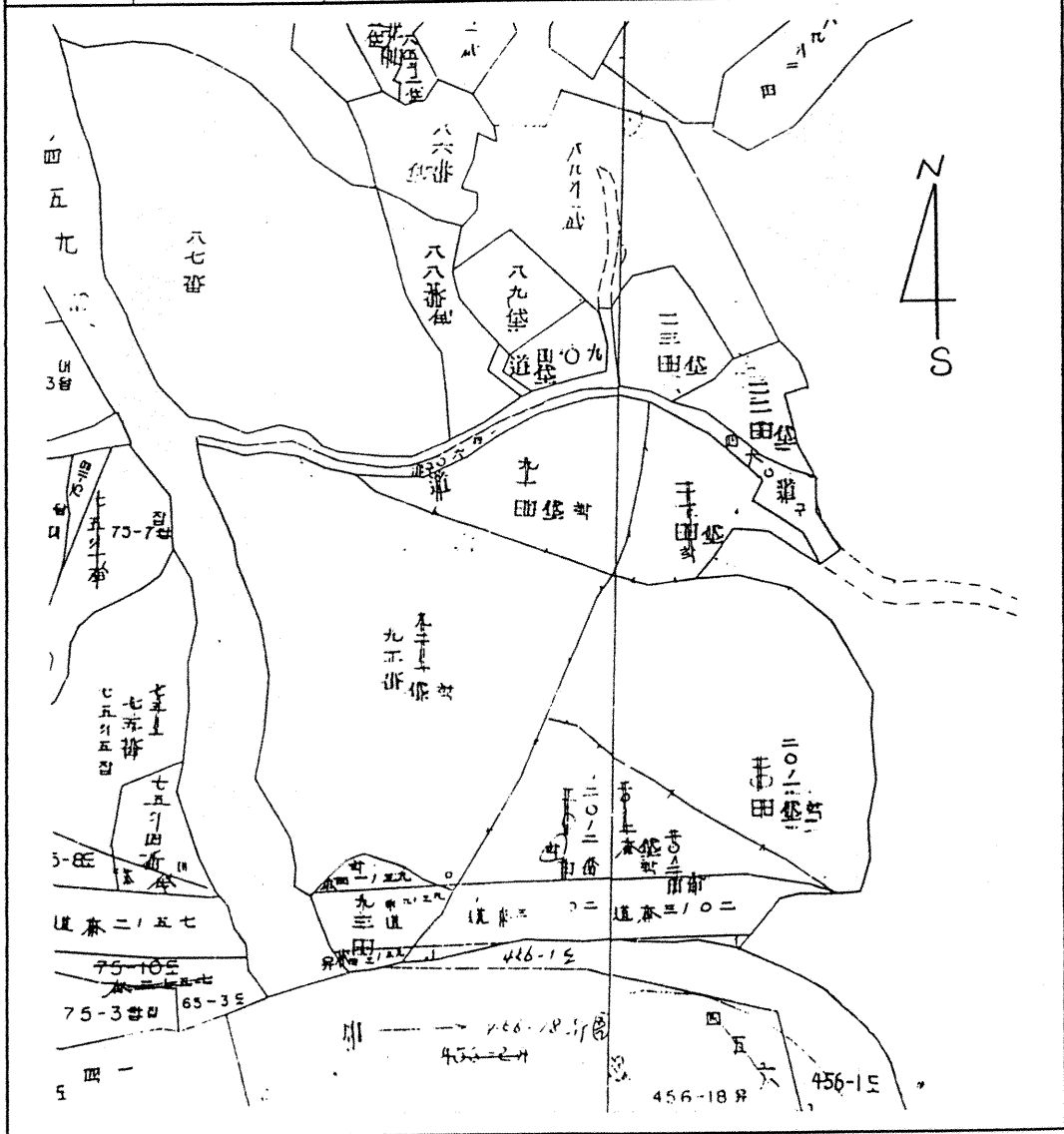
보은교육청 토지 처분 위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대장가격 (천원)	사 유
잡종재산	보은읍 장신리	68의1	임야	42,959	137,468	교육환경개선사업 재원 확보
		68의4	대	347	20,056	
		계		43,306	157,5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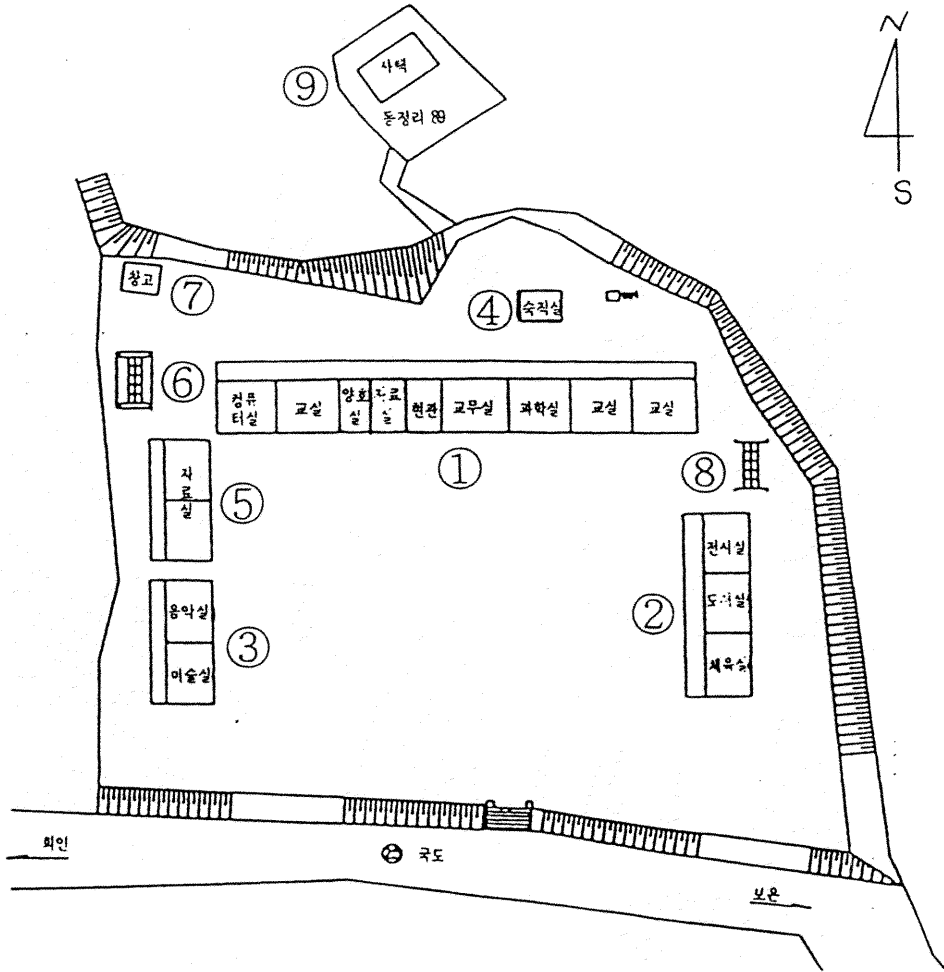
삼산초 동정분교 토지 처분 위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대장가격 (천원)	사 유
잡종재산	수한면 동정리	20-1	학	8,450	58,727	교육환경개산사업 재원 확보
		22	대	304	1,124	
		90	대	195	744	
		93-1	학	93	476	
		88	대	440	1,680	
		89	대	294	1,123	
		계			9,7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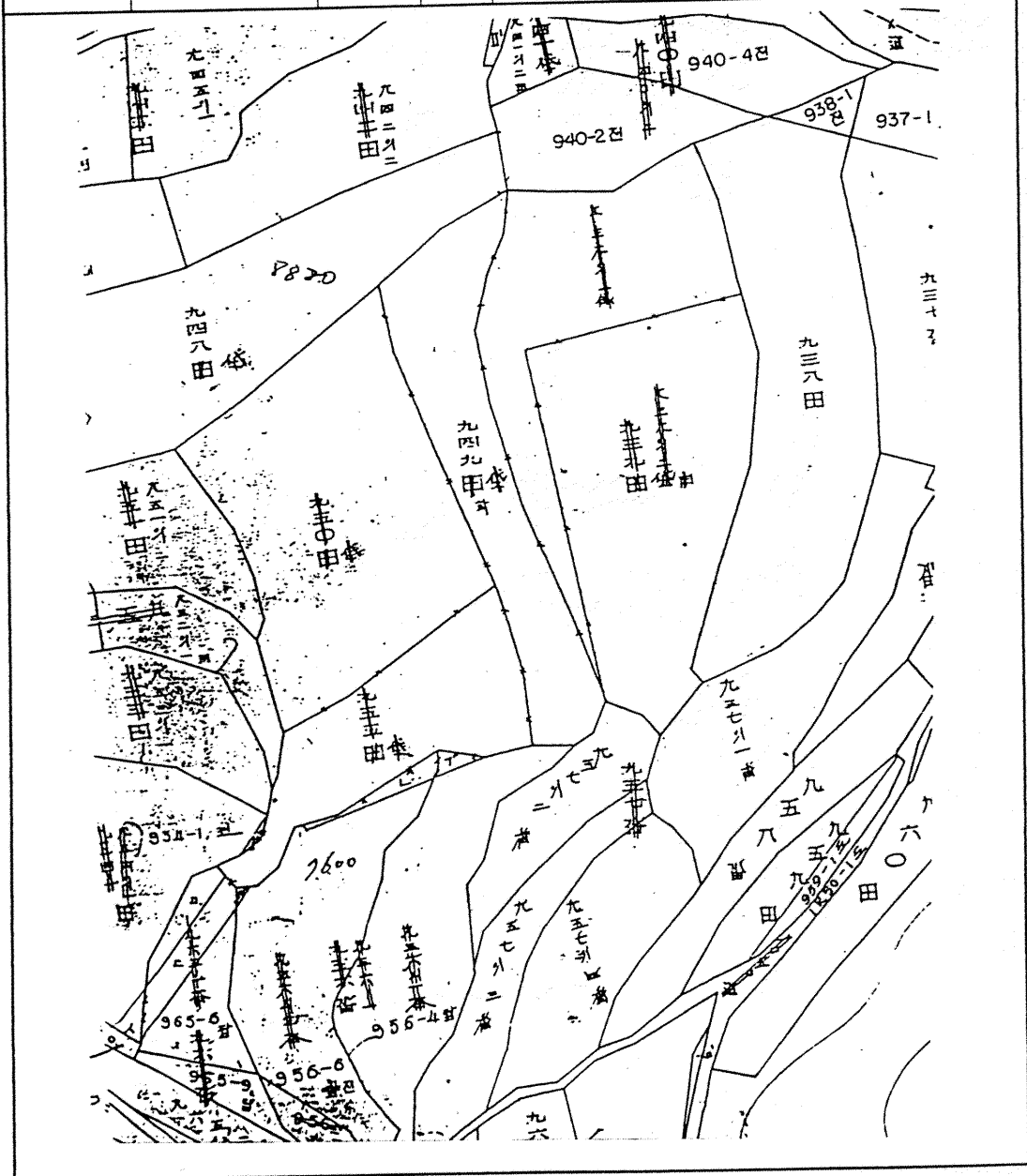
삼산초 동정분교 건물 처분 위치도

소재지	지번	용도	건축 년도	면적 (㎡)	대장가격 (천원)	사 유
수한면 동정리	20의1번지 외 1필지	①교 사	1973	674.0	27,876	교육환경개선사업 재원확보
		②교 사	1966	248.0	5,241	
		③교 사	1971	165.0	3,813	
		④숙직실	1973	26.0	1,465	
		⑤교 사	1961	119.0	1,004	
		⑥화장실	1977	47.3	7,612	
		⑦창 고	1960	31.0	3,903	
		⑧화장실	1973	23.0	1,161	
		⑨관 사	1982	60.0	13,790	
		계		1,393.3	65,865.0	
		공작물		5식	31,531	
		합계			97,3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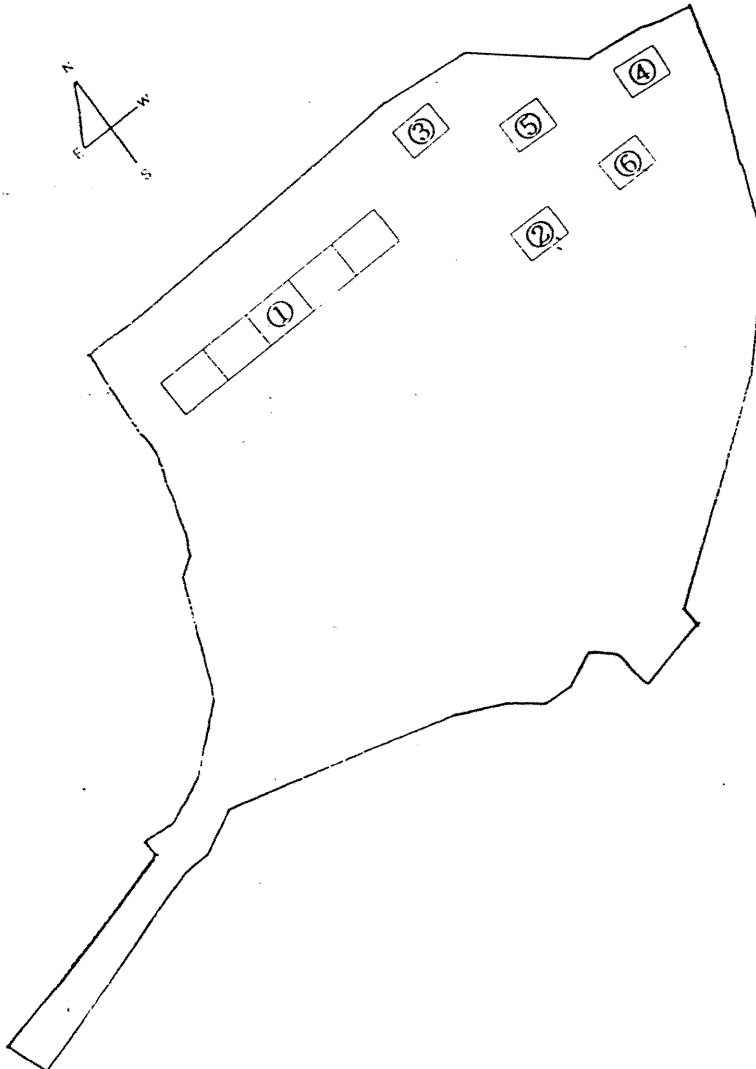
무극초 사정분교 토지 처분 위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대장가격 (천원)	사유
잡종재산	음성읍 사정리	949	학	11,641	71,476	교육환경개선사업 재원확보
		965-7	도로	32	196	
		계		11,673	71,672	



무극초 사정분교 건물 처분 위치도

소재지	지번	용도	건축 년도	면적 (㎡)	대장가격 (천원)	사 유
음성읍 사정리	949	①교 사	1971	359.69	56,158	교육환경개선사업 재원 확보
		②교 사	1968	82.65	2,306	
		③숙직실	1975	33.06	3,257	
		④관 사	1939	36.37	186	
		⑤창 고	1980	32.50	4,730	
		⑥화장실	1972	33.06	1,681	
		계		577.33	68,318	
		입목축		10본	153	
합계				68,471		



(별첨 6)

(제151회 임시회)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3. 3. 29.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년 3월 15일, 충청북도교육감
-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3년 3월 25일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3년 3월 25일)
 - 제3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3년 3월 28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가. 제정이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기관의 권한 및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수임기관은 수임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함(안 제2조).
- 교육감은 이 조례로 위임함 사무의 처리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교육감은 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4조).
-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위임사무 처리에 관하여 수시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각각 별표1, 별표2, 별표3으로 함(안 제7조).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기관의 권한 및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7조(권한위임 사무) 별표 1중 제29호 근거법령 “초·중등교육법 제6조”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7조제2호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추후, 충청북도교육청 자체감사규칙을 조속히 제정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함.

6. 심사결과 : 수정의결.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3년 3월 29일

제안자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1. 제안이유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7조 별표 1중 제29호 각급 학교 감사에 관한 사항 근거법령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초·중등교육법 제6조”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7조제2호”로 함.
(안 제7조 별표 1중 제29호 근거법령)

3. 수정안 : 따로 붙임.

4.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한다.

- 안 제7조 별표 1중 제29호 각급 학교 감사에 관한 사항 근거법령 “초·중등교육법 제6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37조제2호”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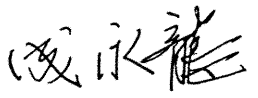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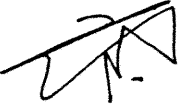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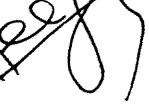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7조(권한위임 사무) 별표 1				제7조(권한위임 사무) 별표 1			
일련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비고	일련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비고
1.-28.	(생략)	(생략)		1.-2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9.	(생략)	<u>초·중등교육법 제6조</u>		29.	(현행과 같음)	<u>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호</u>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3. 3. 29.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성영용 
간사	송대헌 
위원	고규강 
	김남훈 
	이기수 
	진옥경 

(별첨 7)

(제151회 임시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3. 3. 29.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년 3월 15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3년 3월 25일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3년 3월 25일)
- 제3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3년 3월 28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가.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규정상
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간 분할 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연 5내지
8퍼센트에서 연 4내지 6퍼센트에서 연 6퍼센트로 각각 인하 조정함(안
제22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
하지 아니 하는 경우의 연체료율을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 15퍼센트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체기간에 따라 연 12퍼센트에서 연 15퍼센트까지로
연체료율을 차등화하고, 연체료를 부과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하
도록 함(안 제28조제1항 및 제2항).
- 관사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장, 청·소

의장, 시설관리사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서 「사용대상 소속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함(안 제52조제1호).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규정상
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잡종재산의 매각
대금을 10년간 분할 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연 5내지 8퍼센트에서 연 4내
지 6퍼센트에서 연 6퍼센트로 각각 인하 조정하고,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
료, 매각대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 하는 경우의 연체
료율을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 15퍼센트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체기간에
따라 연 12퍼센트에서 연 15퍼센트까지로 연체료율을 차등화하고, 연체료를
부과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며, 관사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
는 규정을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장, 청·소의장, 시설관리사가 직접 사용하
는 경우」에서 「사용대상 소속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사유는 타당하나 조례 문구 해석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안
제52조제1호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사용대
상 공무원 및 그 소속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수정의결 하였음.

6. 심사결과 : 수정의결.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3년 3월 29일

제안자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1. 제안이유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례 조문 해석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적정하게 수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사용대상 공무원 및 그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함.(안 제52조제1호)

3. 수정안 : 따로 붙임.

4.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한다.

- 안 제52조제1호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사용대상 공무원 및 그 소속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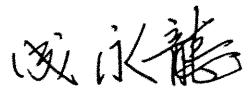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52조(사용료 면제) (생 략)</p> <p>1. <u>사용대상 소속 공무원이 직접 사용</u> <u>하는 경우</u></p> <p>2.~4. (생 략)</p>	<p>제52조(사용료 면제) (현행과 같음)</p> <p>1. <u>사용대상 공무원 및 그 소속 공무원</u> <u>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u></p> <p>2.~4. (현행과 같음)</p>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3. 3.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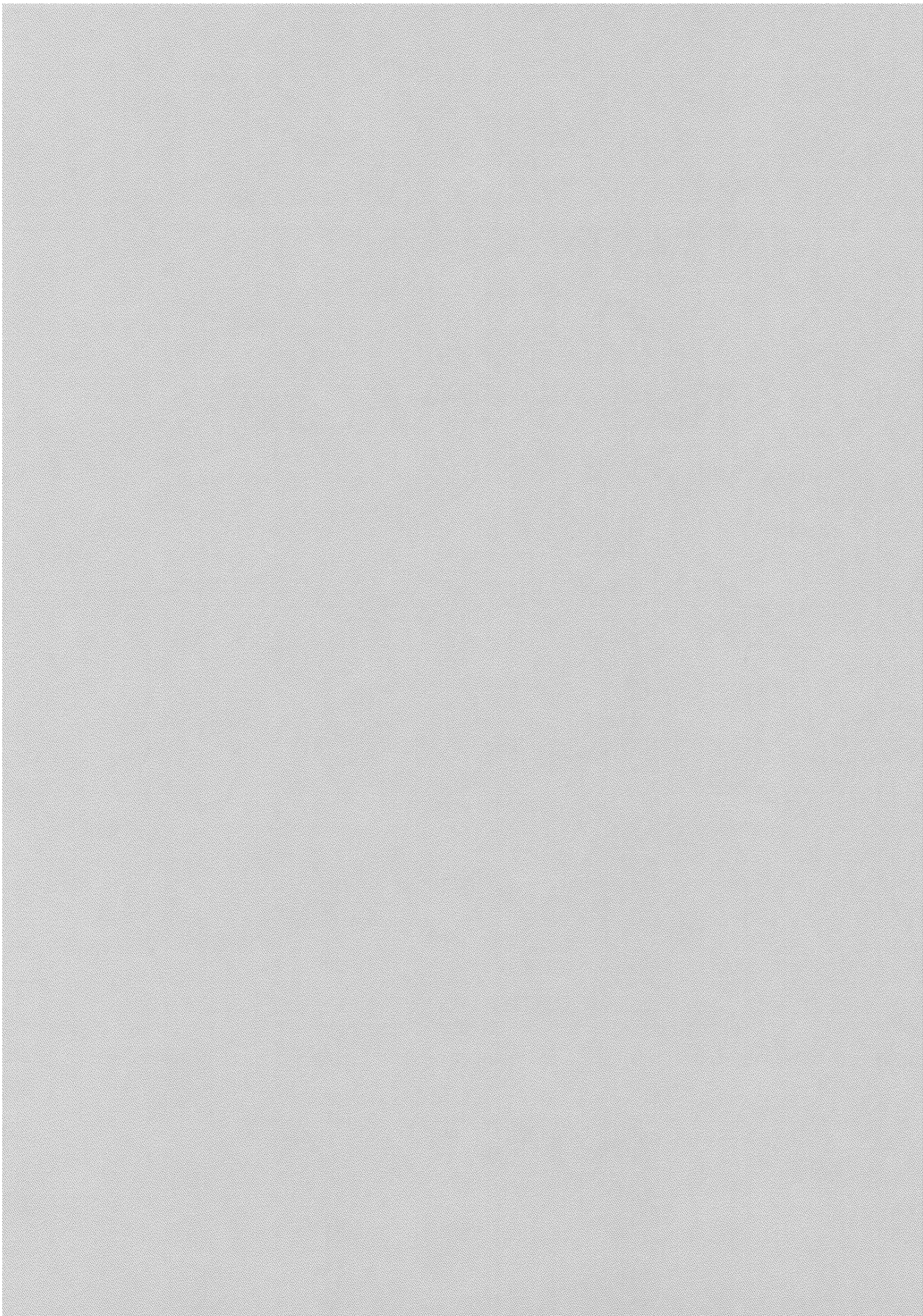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성영용 
간사	송대현 
위원	고규강 
	김남훈 
	이기수 
	진옥경 

第151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條例審查小委員會 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 I. 제15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사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27
- II. 제15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사회)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231
- III. 제15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사회) 제3차 조례심사소위원회241
- IV. 부 록
 - 1.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269

條例審查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3년 3월 25일 (화요일) 11시 22분

議事日程 (제151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附議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 22분 개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도록

1. 위원장선출의건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훈 위원

성영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영용 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성영용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성영용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이번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번 조례심사가 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견

(11시 25분)

● 위원장 성영용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견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규강 위원

송대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성영용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송대현 위원님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의가 없으므로 송대현 위원님을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송대현

성영용 위원장님을 받들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간사로서 충실하게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견

(11시 26분)

● 위원장 성영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견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의사일정안을 본 위원장이 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51회-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우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소위원회의 활동은 오늘과 내일 그리
고 3월 28일 3일간으로 하여 단재교육상
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
일 오전 11시 제2차 소위원회에서 단재교
육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
습니다.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
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성영용, 간사 송대현,

위 원 고규강, 김남훈, 이기수,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2명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 부 록

-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별첨 1)

條例審查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3년 3월 26일 (수요일) 11시 00분

議事日程 (제151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

附議된 案件

1.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회)

● 위원장 성영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

● 위원장 성영웅

의사일정 제1항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 작성의 주관과장인 초등교육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초등교육과장 정무

예. 초등교육과장 정무입니다.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에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03년 주요업무계획에 의거 충북학생상 실천수범학생 표창계획에 따라 단재교육상 학생부문을 삭제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시상부문 중 학생부문 면학상, 충효상, 봉사상을 삭제하고 시상부문중 학술상, 사도상, 공로상

[제151회-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을 사도부문, 학술부문, 공로부문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수상후보자는 12명 이내를 부문별 수상 후보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15인 이내에서 9인 이상 15인 이내로 이렇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성영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떻게 진옥경 위원님부터?

● 고규강 위원

아니 있는 사람부터.....

● 김남훈 위원

희망하는.....

● 위원장 성영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진옥경 위원입니다.

충북학생상의 종류를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지금 단재교육상의 조례는 별도로 해서 그 부문이 확대 됐나요?

● 교육국장 반창남

예. 교육국장 반창남입니다.

현재 단재교육상 분야의 학생상은 3가

지가 있습니다.

면학상, 충효상, 봉사상 그렇게 되어 있고 충북학생상시상규칙에는 창의상, 진취상, 성실상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 가지고 여지까지는 한 2년동안 단재교육상 학생부문은 충북학생상하고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시상을 안해왔고 충북학생상시상규정에 있는 그 3가지 진취상, 창의상, 성실상 이 3가지 분야만 저희가 3명씩 9명을 시상을 해왔습니다.

● 진옥경 위원

네. 단재교육상을 제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꾸리게 되는데 단재교육상의 대상에 대한 논란이 지역사회에서 여러번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이 속에서 충분히 걸러내지 않아졌다 걸러내지 못했다는 그런 말과도 같은데 지금 현재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되어 있고 구성원은 그러면 어떻게 언제부터 구성이 되기 시작했는지 앞으로 변경가능성은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교육국장 반창남

심사위원회는 15인 이내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5명이 그냥 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안되겠다 지금 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9명은 위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15인 이내를 9명 이상 15인 이내 이렇게 위원

회 구성원의 숫자를 좀 요번 기회에 개정하려고 합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면 구성원에 대한 어떤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획되어 있지 않으신지요?

● 교육국장 반창남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교육위원님도 거기 안들어갔다 그런 말씀들도 전해듣고 그래서 교육위원님들도 들어가고 또 일선교장도 들어가고 또 학부모 대표도 들어가고 그래서 다수의 위원이 모여서 심도 깊은 수상대상자를 심의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

● 교육국장 반창남

조례가 개정이 되면 새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 진옥경 위원

한 가지 제안드릴 것은 지난번에도 반 시민적인 단재교육상 후보가 선정이 되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의 구성원이 여기에 들어가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 교육국장 반창남

단재교육상심사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금년도 단재교육상을 수상하도록 하는 심

사위원회라고 하면 약 한달 전에 구성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위원회 구성문제는 우리 교육위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이제 공익에 기반한 시민단체들이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분의 어떤 여러 가지 지금 인사문제들도 지금 많이 그런 것들을 거치면서 점검이 검증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민단체대표를 구성원으로 참여시켜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교육국장 반창남

네. 감사합니다.

● 고규강 위원

고규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단재교육상이라는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주는 거죠.

● 교육국장 반창남

네. 그렇습니다.

● 고규강 위원

기관명칭이 즉 다시 말씀드리면 기관명칭이 없는 교육상조례는 타 시·도에도 찾아본 적이 없고, 저도 기관명칭 충청북도 단재교육상이라고 그래야지 어떤 법규상으로는 그냥 단재교육상으로 조례를 만

드는 일은 없습니다.

경기도 단재교육상인지 충청남도 단재교육상인지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법규상으로는 반드시 주는 도의 기관명칭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교육국장 반창남

전주에서 벌어지는 전주대사습놀이 이래 가지고 상도 주고 대한민국학술상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고유 브랜드를 찾다가 보니까 단재하면 충청북도에서 태어나지는 여기선 았았지만 여기서 사시던 하나의 선각자다 우리 그래서 처음에 단재교육상을 만들적에 충청북도의 고유 브랜드 뭐 이러한 형태로 해서 단재교육상이라고 하는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충청북도단재교육상하는 것보다는 그냥 단재는 충북인의 선각자이기 때문에 단재교육상이라고 수여하는 분이 교육감이기 때문에 충청북도를 앞에 안들어가도 단재선생의 뜻이라든지 이런 것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 그래서 당초에 단재교육상 조례를 제정할 적에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다 좋다고 동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 고규강 위원

그런데 그거는 저도 단재교육상하면 충청북도 단재 신채호라는 것은 전국의 국민들이 다 아는데, 조례로 법규상으로 만

들적에는 단재교육상으로 하더라도 조례의 문구는 충청북도단재교육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목록을 어디서 찾아 보더라도 단재교육상 이거 어디서 주는건가 국가에서 주는 건가 어느 도에서 주는건가 조례를 넣을 적에는 반드시 기관명을 삽입하는 게 맞고, 또 한가지는 충북학생상규칙이 제456호로 2000년 12월 15일 제정된 바 있으나 이 또한 충청북도학생상규칙으로 해야지 약자를 쓰는 게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에 모든 것이 충청남도는 충청남도학생상 충북학생상이라고 쓰면은 이거는 법규상으로 조례로 만들적에 무식하다고 그래요. 이런 거 찾아 보십시오. 있나 타 시·도 조례의 목록을 전부 몇 백가지가 되는데 약자를 사용하는데가 없습니다. 법규상으로 그러니까 학생상도 충북학생상이라고 하면 안되는 겁니다. 충청북도학생상 이렇게 고쳐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제가 보니까 학생부문의 시상부문을 면학상, 충효상, 봉사상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진취부문, 창의부문, 성실부문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학생상도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어떤 내부적으로 도교육청에 있는 사람들을 시상할 때는 내부규정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나 타 즉 학생들이나 민간인들에게 상을 줄 적에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적에 재판을 할 적에 법규로 만들어 놓지 않고 내부규정으로 만들었을 적에는 재판부에서도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시상하라는 거는 내부규정으로 하지만 학교장이 학교에서 학교장 상을 줄 적에는 내부규정 됩니다.

왜 그 학교 자체이니까 그러나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서 각급 학교로 시상을 줬을 적에 이의신청이나 어떤 논란이 있을 적에는 법상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상도 제가 보건데는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는 조례로 법규로 만들어야 도교육청이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법적으로 승산이 있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그렇게 제가 생각할 적에는 여기 보면은 시상부문중 학생부문 근데 학생시상규칙을 한번 제가 여기에 제출이 안돼 가지고 떠들어 봤습니다.

근데 뭐냐하면은 심사위원회는 의결기관입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누구를 주고 찬성에 의해 가지고 몇 분의 이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충청북도학생상이나 단재교육상이나 인원수도 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되고 심사위원회도 있고 다 같아요. 그러면 여기다 삭제할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상부

문중 학생부문에 진취부문, 창의부문, 성실부문 이걸 삽입을 하면은 여기 충청북도단재교육상에 다 포함이 돼요. 조례로 다시 학생상의 위원회 다시 만들고 단재교육상의 위원회 만들 필요가 없이 간단하게 그 문구만 삽입을 하면은 조례로 되어서 이것이 쉽게 되는데 뭣 때문에 그거는 내부규정으로 하고 단재교육상은 조례로 만들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 교육국장 반찬남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영웅

답변을 필요로 하십니까?

● 교육국장 반찬남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 고규강 위원

어떻게 하실런지.

● 교육국장 반찬남

아니 위원님 말씀도 아주 중요한 핵심을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 저희가 그 문제도 생각을 했습시다마는 기왕에 학생상시상규칙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단재교육상 학생부문하고 둘이 상충이 되어 가지고 뭐 하나로 통일을 하자 그래서 학생상시상규칙으로 하나로 단재교육상에서 학생부문을 충북학생상시상규칙으로 통합을 하고 단재는 선생님들 또 일반 이런 분야만 하도록 그래서

[제151회-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단체교육상 위상을 높이고 학생상은 나이 어린 학생이기 때문에 규칙으로도 정함이 타당하다 그렇게 해서 요번에 2년 전에 올렸어요 저희가 올렸는데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기왕 만들어진 조례인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그걸 빨려고 하느냐 그래서 부결이 되어가지고 요번에 저희가 다시 학생은 좀 학생시상규칙으로 정비를 하고 단체는 일반 분야나 사도부문으로 다가 격상을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통합을 하자 그렇게 해서 제가 제안을 한 겁니다.

● 고규강 위원

말씀은 제가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내부규정으로 안되는 거예요. 학생상 어떤 조례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간단하게 시상부문중 학생부문 진취, 창의, 성실부분을 삽입을 하면은 날짜가 틀려도 상을 주는 날짜가 틀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학생부문 따로 주어도 되고 규정에 의해서 그런데 이거를 별도로 하게 된다면 학생상은 내부규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 교육국장 반창남

예. 그럼 관계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할 수 있어요. 규칙으로 안된다는 게 있나 법적으로.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추후에 답변을

올리면 좋겠는데 허락을 하시겠습니까?

● 고규강 위원

예.

● 교육국장 반창남

예. 그럼 추후에 제가 서면답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영웅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 간사 송대현

송대현 교육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다 질문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아까 답변도 있었습니까마는 드리고자 합니다.

단체교육상은 우리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라든가 또 일반 공로자든가 가장 교육에 공로가 있는 분에게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 제정이 되었는데 상금이 제정된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 상금을 인상할 무슨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교육국장

예. 지난해에 저희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렸는데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도민대상 뭐 그런 게 있어요. 거기도 상금이 100만원인데 왜 단체상만 200만원 주느냐 형평성이 어긋난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 간사 송대현

예산 삭감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충청북도교육감이 주는 가장 영예로운 상이라고 본다면 상금이 더 인상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영예로운 대상자를 선발한다고 할 적에 심사위원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집행청에서 두 번이나 올렸다가 교육위원회에서 아마 두 번 다 부결을 한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들은 즉 그 핵심내용이 심사위원을 다양하게 구성해서 정말로 누구나가 인정하는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아야 된다는 논의 때문에 지난번 두 번이나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9인 내지 15인 이내에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지금 조례에 올라와 있는데 개정조례에, 그 심사위원 진육경 위원도 조금 전에 질의 했습니다마는 구성을 다원화시키고 누가 봐도 참 고개가 수그러지는 타실만한 분이 최고 영예로운 단재 신채호의 상을 받는구나 그런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심사위원구성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고규강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올해 송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몇 가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단재교육상 심사위원으로 올해 처음 들어가서 봤는데 거기 위원구성을 보니까 판사님도 들어가셨고 또 학부모대표도 들어갔고 또 어떤 분이더라 사회의 어떤 덕망있는 몇 분 들어가셨더라고 그렇게 하고, 심사를 할 적에 우리 여기 전장 학관님 나오셨네 쪽 들어오신 분들의 공적서를 전부 발체를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면 학술상이다 그러면 학술상에 3명이 들어오면 3명의 모든 공적서를 심사하게 주시더라구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그걸 전부 검토하는 거예요. 근대 여기서 올릴 적에는 1,2,3으로 이렇게 해서 올렸더라구요. 여기 보면 뭉뚱뚱 공적서에 그래 가지고 하는데 심사위원들은 제가 볼 적에는 각 분야에서 골고루 이렇게 제가 보는 견지에는 그렇게 됐어요.

이상입니다.

● 간사 송대헌

고규강 위원님 지금 보충답변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참여했던 분으로 집행청의 우리 국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은 겁니다.

● 교육국장 반창남

예. 고규강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단재교육상이 충북에서 가장 교육계에서는 영예로운 상이다 그래서 심사위원 선정서부터 여러 가지 심의과정을 공개도 하고 누가 보더라도 참으로 탈만한

[제151회-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사람이 탓다라고 심사과정, 절차, 방법 모두가 훌륭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대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수를 15인까지 할 수 있으니까 좀 배가해서 각계각층의 인사를 막리한 그러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위원회 심의도 좀더 명명백백하게 해서 충북의 훌륭한 분들이 수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간사 송대헌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성영웅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같은 거 할 때는 신·구조례안 대비표를 같이 첨부해서 이해하기 쉽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잠시 정회하여 본 조례안 의결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51분 속개)

● 위원장 성영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좀더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의결을 28일로 연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계시는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28일로 연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3월 28일 오후 2시 제3차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조례심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성영용, 간사 송대현,

위 원 고규강, 김남훈, 송대현, 이기수,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2명

교육국장 반창남, 초등교육과장 정무.

條例審查小委員會

忠淸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3년 3월 28일 (금요일) 14시 03분

議事日程 (제151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附議된 案件

1.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03분 개회) 겠습니다.

● 위원장 성영웅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 위원장 성영웅

1.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성영웅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간담회 협의결과 본 조례안은 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 의결에 앞서 잠시 협의를 하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단재교육상조례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안

(14시 31분)

● 위원장 성영용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 작성의 주관 과장인 기획관리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저희가 교육감의 권한을 산하기관에 위임을 해줬는데 지금까지는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위임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의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1항에 의해서 조례로 정해서 위임해줘야 되고, 교육인적부장관의 권한을 교육감한테 위임해서 교육감이 다시 산하기관에 위임하는 재위임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해서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조례로 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규칙으로 정해서 해왔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사실

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로 정할 것은 조례로 정하고 규칙으로 정할 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정비하면서 다른 법규에 의해서 위임이 권한이 위임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시면 그 학원지도·감독권이 교육장한테 이미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이번 조례제정을 하면서 삭제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정비하면서 지금까지 현행 규칙의 위임된 사무가 108개였었는데 이번에 조례로 정한 것은 정비해서 41건하고 규칙으로 17건으로 정해서 전체적으로 58건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63건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법규에서 이미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영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규강 위원

고규강 위원입니다.

2장에 제29호를 한번 봐 주세요.

각급 학교감사에 관한 사항하고 초·중
등교육법 제6조 다른 것은 전부 잘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장 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 별
표1을 보면 교육장에게위임하는사무 제29
호 각급 학교감사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
한위임·위탁에관한규정에 업무가 위임되
면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근거 법령이 초·중등교육법 제6조를 근
거로 위임을 하겠다고 하는데, 초·중등
교육법 제6조를 보면 국립학교는 교육인
적자원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한 포괄적인 교육감의 지
도·감독업무를 위임하고 있다고 했는데,
초·중등교육법 제6조를 위임할 경우에는
제29호 위임업무가 공·사립학교 지도·
감독권으로 고쳐 위임을 하여야 한다고
보며 감사에 관한 사항은 모법이 대통령
령 제7089호로 제정된 행정감사규정에 의
하여 각급 감사실시 기관장들이 이 규정
을 근거로 감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 법률
에서 규정을 인용하여 감사의 업무를 위
임할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6조의 교육감의
지도·감독업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경
우에는 포괄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도교육
청의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는 장학지

도에서부터 모든 지도·감독업무가 교육
장에게 위임되기 때문에 도교육청의 초등
교육과와 중등교육과의 업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담당직원들이 모두 하급 교육청으
로 가야 되는데, 그래도 위임을 해야 한
다고 한다면 각급 학교감사에 관한 사항
을 공·사립학교 지도·감독으로 변경하
여 위임을 하도록 하고 변경하지 못한다
면 이는 삭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
게 생각하시는지?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먼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행
정권한위임에 관해서 2002년도 교육위원
회 행정감사시에 많은 조언과 지도를 해
주신 고규강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10월 21일날 저희들이 교육위원
회 행정감사를 받으면서 행정권한위임이
교육감이 교육장에게 주는 규칙사항이 사
실상 도민을 대표에서 전체 도의원들이
심의한 조례에 의해서 나가지 아니하고
규칙으로 정한데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
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정당한 지
적으로 보고 오늘날까지 저희들 나름대로
법조문을 검토를 해서 안을 내게 되었습
니다.

지금 고규강 위원님께서 교육장에게 위
임하는 안중 각급 학교의 감사에 관한 사

항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도 고규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급 학교감사에 관한 감사의 위임법률이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서 말하는 국립학교와 초·중학교에 감독권을 지칭하는 총괄규정인 지도·감독권 범위, 즉 교육인적부장관이 지도할 대안 초·중등학교는 교육감 이것을 구분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제6조만 한정해서 얘기하기는 한계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감사에 관해서는 사실상 어떤 법률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상태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이해하기는 지도·감독의 범위에서 감사는 지도·감독할 수 있는 수단의 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을 어떠한 수단으로써 하겠느냐라고 할 때에 그 감사의 범위를 광할하게 광범위하게 봐서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마는, 고규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보다 구체적인 법인 행정감사규정에 의해서 각급 감사실시 기관장이 당해 감사를 할 경우에는 필요한 내부 규정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도 그 규정을 만들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 행정감사규정 대동

령령의 행정감사규정을 근거로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의 행정감사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해 왔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행정감사규정 제1조에 보시면은 교육인적자원부나 시·도교육청 또 그 하급기관이 당해 기관을 감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라고 해서, 교육인적자원부 행정감사규정이 교육감이나 교육감으로부터 위임받은 시·군교육장이 감사할 때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지금 고규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감사실시 기관이 자주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더 연구검토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규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각급 학교감사에 관한 규정을 법을 적용을 좀더 보고드리면 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7조에 교육장의 분장사무중에서 기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다시 교육장한테 위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저희들 부분을 일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7조에 규정되어 있는 기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무로 봐주시면, 각급 학교감사에 관한 사항

도 이번 조례에 넣어도 무난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규강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교육감 권한을 위임하지 않고 시·군 11개 시·군 교육청에서 감사를 한 것은 권한 없는 자가 권한을 행사한 겁니다.

따라서 견책을 받거나 어떤 징계를 받은 사람이 소청청구를 했을 경우에는 교육청은 백전백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권한 없는 자가 행사했기 때문에 교육법에 보면 감사법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감사규정 제34조 규정에서 각급 감사실시 기관장은 기관장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 즉 충청북도는 교육장은 자치단체장이 아닙니다. 교육장이 준 사무 그 사무처리 교육·학예에 대해서, 따라서 충청북도자치단체장이 교육감이기 때문에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규정 규칙이 있어야 그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10월인가 11월에 자체감사 우리 규정을 가져와 보라. 없었어요. 제가 10월에 행정감사했을 때도 그걸 달라고 그러니까 없다고 그러더라도 규정에 없는 걸 감사를 뭘 어떻게 합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

과에 계시는 분들은 이 충청북도 교육계에서 가장 법을 잘 알고 예절이 바르고 일선 모든 행정기관이나 교육계에 지도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감사과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들렸지만 어느 교장실에 가 있을 적에 중앙에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왔습니다.

교장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들어오시는데 90도의 인사를 하면서 나는 여지껏 그렇게 예절이 밝은 분을 못 봤어 증명서 내보이고 감사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 2세 교육에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인사를 하면서 앞으로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는데, 그것이 그런 인격적인 태도와 예절을 가진 사람이 감사를 할 적에 일선에서도 뭐를 물어보고 싶고 감사원이 시키는 대로 아하 그 규정이 맞구나 이렇게 해서 교육이 행정이 올바르게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위원 되기 전에 학교에 더러더러 갑니다. 친구들도 있고 뭐 후배들도 있고 교장들이 감사 지금 시에서 나왔다가야 군에서 나왔다 뭐 수업하는데 선생님들 오라해 가지고 앞에 세워 있고 드러워서 교장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드러워서 이것이 교육행정의 자율화냐 민주화냐 지도·감독이나 적벌 감사냐 이렇게 따졌을 적에 앞으로 안그

러시겠지만 감사규정도 없는 권한도 없는 걸 가지고 여지껏 15년간 이런 횡포를 부렸다니 참으로 저는 한심스럽기 그지없고, 앞으로 관리국장님 계시는데 감사과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은 전문직도 하나 거기다 넣어 주십시오. 옛날에도 전문직 있었는데 전문직도 넣어줘서 교육·학예에 관한 것은 전문직이 고등학교 감사를 하고 일반 교육청의 교육과장들이 분들도 잘 지도할 수 있게 훌륭한 사람들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기수 위원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과장님 교육장에 대한 위임사항 행정위임사항 이것은 조례로 정해야 되고 또 장관이 교육감한테 하는 것은 규칙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조례로 제정해 갖고서 이걸 제정을 해 갖고서 행정업무를 위임해야 되는데 그 시점이 언제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 기획관리과장 안응균

기획관리과장 안응균입니다.

사실상 권한위임된 것은 92년 그전부터였습니다. 규칙을 정한 것은 92년도에 제정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조례와 규칙으로 구분해서 정해 가지고

위임을 해줘야 되는데 다 이걸 합쳐서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그래 이걸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위임 사무 장관의 사무를 갖다가 교육감한테 위임해서 교육감이 다시 재위임하는 사무는 규칙으로 정하고, 그리고 교육감의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요번에 정비하는 겁니다.

이미 사실 권한위임되어 있는 겁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러면 우리 고부의장이 설명했듯이 오랫동안 이루어진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인 하자문제는 그냥 얼버무려 넘어가도 괜찮은 얘기인가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깔끔하게 해놓지 못한 상태에서 감사를 초·중학교를 교육감한테 위임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라든가 국가사무중 단체에 위임한 사항들은 반드시 조례로 위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지난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규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

을 때 저희들도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어떻게 저희들이 규칙에 의해서 교육장님들이 감사를 한중에서 징계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권한을 규칙에 주지를 않아서 직접 불이익을 받는 그런 감사의 처분은 여기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감님이 징계부분 그리고 나머지 경고, 주의 또 회수 요런 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교육장님들이 자체에서 했는데, 그것이 사실상 위법이나 아니냐를 논하기 전에 저희들이 어떤 규칙을 조례로 정해야 될 사항을 규칙으로 정해서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조례로 개정해 주시면 그 조례의 근거에 따라서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거에 근거가 조금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치유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관리과장 안응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번에 법규정비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삭제되는 것은 다른 법규에 의해서 위임된 거는 삭제시켰고 저희가 다시 넣은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감사에 관한 사항 요거 하고 사립학교 4개 직인등록관계 또 장학

지도관계 요걸 교육장한테 위임해주는 3가지를 더 추가로 넣었고 직속기관장한테 위임되는 걸 갖다가 회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에 관한 사항은 지금까지 저희 규칙으로 정했을 때 감사라는 표현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다만 학교 지도감독으로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 이기수 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 22조는 교육감의 교육·학계에 관한 각급 사무에 대한 관장을 쪽 되어 있고 37조에는 교육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업무를 명시했습니다.

그러면 37조 사항을 보면 교육장은 시·도의 교육·학계에 관한 사무중 다음 각호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해 갖고서 공·사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이렇게 해갖고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로써 써졌는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이 있겠죠.

그러면 그런 사항은 사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든 더 모법상에서 지적해 준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교육감이 받아 갖고서 그걸 규칙으로 내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죠. 안그렇습니까? 그건.

● 기획관리과장 안응균

이거는 37조의 사항은 시행령은 37조의 1항의 사항이 또 다시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장관의 사무를 갖다가 받아서 다시 재위임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감의 고유사무를 갖다가 교육장한테 위임을 해 주는 겁니다. 조례로 정해야 됩니다.

● 이기수 위원

아니 37조 사항이 그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이 그게 어떻습니까? 그건 교육법상 상당히 상위법인 얘기인데.....

● 기획관리과장 안응균

아니 글썄 법률로 정한 것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중 요런 사무를 위임받아 가지고서 분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위임을 받아가지고 분장한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이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7조는 교육장은 시·도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교육감한테 받는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는 국가사무중 단체의 무사무로 봐야 됩니다.

단체의무사무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로 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이기수 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교육자치법에 말입니

다. 교육장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중 다음 각호에 위임 그럼 벌써 교육감은 교육자치법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의무적으로 교육장한테 위임해야 할 그런 의무조항도 포함된 애기 아니에요? 이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응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호에 대해서는 여기가 구체적인게 나와 있지 않고 총괄적으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나와있고 그 업무중에서 뭐뭐뭐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다음장에 시행령에 나옵니다.

● 이기수 위원

그 시행령도 장관이한 시행령.....

● 기획관리과장 안응균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미 법률로써 위임해 준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여기 표현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임받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위임을 안해 주면 안되는 겁니다. 위임을 교육감이 시·군 교육장한테 위임을 해줘야만이 그걸 분장이 되는 겁니다.

● 이기수 위원

아니 글썄 위임을 해주게끔 하는게 교육감으로서 의무적으로 해주게끔 되어 있

는 사항 아니냐는 얘기지.

● 기획관리과장 안응균

그러니까 위임을 해 주기 위해서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 고규강 위원

이기수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해 드릴게요. 제가 같이 여기 있는 분들하고 만들었으니까.

지금 법으로 위임을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위임을 해 주는데 포괄적으로 전체를 위임해주게 법에 되어 있지 않고 시행령 22조가 있어요. 교육감의 고유권한 중 몇 호에서 몇 호까지는 교육장에게 위임하라는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전부 만들어 가지고 내려보내는 중이에요. 이게 이 조례가.

● 이기수 위원

그러면 시행령이라는 얘기가 시행령으로 되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내려가는 얘기인데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지.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왜냐하면 위임을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위임을 해주어야 합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러면 밑에 조항에 기타 시·도의 조례로 정한 사무는 그건 또 뭐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거 외에 지금 현재 이거 외에 만약에

다른 게 정할 수 있다면은 시·도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정할 수 있다 이말이죠. 그러면 그것도 위임된다 이말입니다.

● 고규강 위원

저기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충청북도의 지방자치단체장이지 교육장은 자치단체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음성군교육장이죠.

그러면 법적으로 법으로 교육감에게 준 고유의 권한을 시행령에서 또 뭉뚱뚱들 교육장에게 내려보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임을 주지 않으면 사실 분장사무거든 교육장은 교육감이 준 분장사무에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37조의 시행령 22조 각 호의 근거법령을 호수별로 아주 자세하게, 시·군 교육청에서 어떤 예를 들면 5항의 지역교육청이면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이 거기 있으면 지방공무원법 제6조2항 이거만 딱 떠들어 보면 지방에 있는 각 시·군에 있는 소속 공무원들도 아 이게 법 뭐에 해당하니까 읽어 보고 할 수 있게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이게.

● 기획관리과장 안응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임을 받아 보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정해서

[제151회-제3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임을 해줘야만이 교육장이 권한행사를 하는 겁니다.

● 이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영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와 또 직속기관장에 위임하는 사무 중 둘 다 7조와 관련하여 6개 항목만 위임이 되어 있는데 전에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 관한 규칙 93년도 10월 25일 제정해서 6차에 걸쳐서 개정이 되어서 쪽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해오면서 학교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지금까지 26개 사항이었습니다. 근데 6개 사항으로 줄어 들고 또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전에는 12개 사항에서 또 6개 사항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규칙이 한 십여년간 하면서 이게 지금까지 잘못 시행되어 왔다는 얘기인가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그것이 시행규칙을 우리가 집행함에 있어서는 지금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로 들어갈 사항하고 규칙으로 들어갈 사항하고 다 그냥 포함해서 규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가지 수가 여러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례만을 딱 띠어서 조례로 위임할 사항만 떼어서 6개씩 주고 다시 또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규칙을 저희들이 정비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권한위임했던 것을 규칙사항으로 빠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임하는 범위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 위원장 성영용

지금 규칙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줄어든 걸로 되어 있거든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규칙은 저희들이 조례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안을 올리겠습니다.

● 기획관리과장 안응균

이해가 되게 말씀드리자면 특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미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은 이미 다른 법규에 의해서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 삭제 시켰습니다.

● 위원장 성영용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잠시 정회해서 본 조례안 의견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 위원장 성영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담회 협의결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7조 관련 별표1중 29호 근거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6조”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7조제2호”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11분)

● 위원장 성영웅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 작성의 주관과장인 학교운영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미리 나누어 드린 개정조례안 설명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그 동안에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은 2002년 11월 29일날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었고 동년 12월 26일날 행정자치부에서 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개정안을 입안을 해서 2003년 1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10일 충청북도교육청의 법제심의회를 거쳐서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크게 나누어서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및 분할납부시에 이자율을 인하 조정하는 것입니다. 종래에는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할 시에 이자율을 현재의 5%에서 연 4%로 하향조정하고 또 연 8%의 경우에는 6%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

[제151회-제3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시에 이자율은 현재의 연 8%에서 연 6%로 하향조정코자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동안 공유재산을 이용한 국민들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료, 매각대 등의 이자율을 시중 금리보다 높게 적용함으로써 지방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동안의 이자율의 변동추이를 보시면 하향조정된 것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기셔서 2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정코자 하는 것은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그 잔액에 대해서 연체요율을 부과했는데 이것을 인하코자 하는 것입니다.

종래에는 연체요율을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 15%로 하던 것을 다음과 같이 연체기간에 따라서 연 12%에서 연 15%로 연체기간에 따라서 차등적용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체기간은 납부일로부터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개정사유는 금융기관의 연체료는 연체기간 별로 차등적용 하는 추세임에도 공유재산의 매각대 등은 획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매각대금의 조기납부도 유

도할 수도 있고 체납을 방지 할 수 있는 효과를 거행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조기납부시에 연체료를 인하는 그런 효과를 거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의 경우에 연체이자 부과기간을 60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체금액의 최고금액은 원금에 77%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행 저희 조례는 연 15%로 무기한 부과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연체를 하게 되면 원금의 두배가 되는 경우도 있고 기간이 흐를수록 그 금액이 아주 무제한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무기한적인 연체료 부과는 주민들에게 지나친 금전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고말씀드릴 것은 관사사용료의 면제대상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사용인의 면제대상을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장, 청·소의 장, 시설관리사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일일이 열거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거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사유는 관사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원거리 거주자가 통근의 부담없이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직원 복지차원에서 운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면 누구나 사용료 부담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각급 학교의 교장관사가 있을 경우에 그 학교의 소속공무원이 거주할 경우에 종전에는 읍지역 이상이면 전부 관사료를 납부 받았습니니다. 이것을 면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외부인이 관사를 사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서는 사용료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뒤에 표시를 보시면 각 시·도의 관사관련 조례를 검토를 하면 저희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개정코자 하는 소속공무원으로 변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까지 관사사용료 면제 대상자가 확대됨으로써 세수의 결손이라 할까 이것이 감수부분이 현 기준으로 봐서 약 2,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간략히 개정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성영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규강 위원

다른 위원님들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게 있어 가지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교육비특별회계소관 소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유권 어떤 등기가 넘어갈 때도 소유권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고 관리하고 소관하고는 저는 틀리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제목이 고쳐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0조에서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격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감소관공유재산을 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으로 제목을 붙인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교육감이란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집행기관소관의 공유재산조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충청북도교육감소

[제151회-제3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관공유재산관리조례, 모든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교육감 명의로 되어있죠.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예. 맞습니다.

● 고규강 위원

그래서 소유권이 그러니까 이게 잘못 내려온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담당자한테 충청북도 고규강 위원이 이걸 잘못됐다 이렇게 한번 건의를 해보십시오. 그 사람도 잘못됐다고 그럴 겁니다.

충청북도교육감공유관리조례지 특별회계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법을 아는 사람 같으면 등기를 여러번 내고 해봐도 잘못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게 있으면 한번 말씀 해보세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현행 관련조례는 1991년 3월 25일날 제정되었는데 당시에 교육부의 준칙에 의해서 전 시·도가 만들어졌었습니다.

지금 관련하신 사항에 대해서 몇 군대를 검토를 해보니까 지방재정법에 의하면은 교육비특별회계소관이 공유재산 이런 명칭이 열거된 것도 있고, 또 지방재정법 81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중 1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이런 어떤 회계라는 개

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규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한 사항도 틀린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사례도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제정 당시부터 서울시에에는 교육감소관으로 했습니다.

나머지 15개 시·도는 똑같이 교육비특별회계소관으로 되어 있고, 차후 이 문제는 좀더 저희들이 검토와 신중한 내용을 검토해서 추후 명칭개정문제는 차후에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고규강 위원

공문을 내려보낸 입안한 담당관에게 한번 물어 보십시오. 물어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잘못됐다고 아마 할겁니다. 틀림없이 서울시에 제가 물어봤어요. 서울시는 제대로 한 겁니다. 서울은 그러니까 그거 한번 참고로 해 주시고.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제에 명칭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고규강 위원

또 한 가지 이해가 안되는 건데 28조2항에 보면은 제1항에 의한 연체료 부과 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꼭 하시는데 보니까 이자가 7년이상

지나면 두배가 되고 이런 말씀을 해서 가지고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1,2,3,4호에 보면 연체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는 연 15% 그래서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는데 우리가 세를 주잡아요. 세를 주면은 돈이 없으면 당신 언제까지 60월 안으로 가져와라 근데 못 가져와 60월이면 5년이죠. 6년, 7년, 8년 가도 못 가져와 그러면 이 문구로 보면 연체기간은 납기일로부터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봤을 적에 이 문구로 보면 8년, 9년, 10년 되도 10년 걸 다 받아야 된다는 걸로 되어 있어요. 왜 연체기간은 납기일로부터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 했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8년도 가고 9년도 가고 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다 연체기간이 아니라 연체이자 부과기간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연체이자 부과기간 하면은 60개월 이상의 이자는 안받아도 돼 8년되고 9년, 10년이 되도, 그런데 지방에 내려보냈을 적에 우리 교육청에 내려보냈을 적에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 8년 있다 내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왜 4항에 연체기간은 6월 이상인 경우 연 15%니까 그래서 연체부과, 연체이자부과라든가 연체부과기간은 납기일로부터 60월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 공무원들이 아하 이자는 60개월 이상

을 받아서는 안되는구나 이해가 쉽게 법이라는 것은 만인이 알기 쉽게 해주는 것이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표준안이 우리가 교육부나 저희들 도교육청이나 학교에 있을 적에 내려오면 표준안이 그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 거기에 비추어 우리 현장에 맞게 충청북도나 충청북도 또 이해가 안되는 것은 이해가 되게끔 만들어 주는 게 법인데, 글썽 전 이렇게 됐을 적에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이거 이해 못해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우선 사과드릴 것은 제가 설명서와 조례안 원문하고 똑같이 하지 못하고 앞부분을 조금 생략해서 그렇습니다.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원문에는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이런데 앞머리 부분을 제가 설명서에 빠뜨려서 이런 혼란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이런 원문은 조례안 원문에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서에 요 부분을 빠뜨려서 다소 혼란이 오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 고규강 위원

내려보내실 때는 그것을 그렇게 못을

박으면 담당공무원들이 이해하기 쉽
게.....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지난번 본회의에서 설명드렸듯이 조례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
명서에 요걸 조금 빠뜨리고 그래서 혼란
이 온 것 같은데 죄송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8조제2항을 신
설했는데 여기에는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
는 연체기간은 그래서 앞부분의 연체료
부과대상 기간은 60월이다 하는 것을 앞
머리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고규강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
해가 안돼 가지고 우리 의사국장님한테도
물어보고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제
52조를 이렇게 보면은 사용대상 소속공무
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설명을
아까 잘 해주셨어요. 즉 1급관사에 교육
감님이 관사가 시원찮아 가지고 난 내집
에서 다니겠다 이랬을 적에 그 집을 비어
두면 절단나니까 쥐가 드나들고 집은 1년
만 비어놓으면 허물어지니까 누구를 거기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규정이 없
으니까 이걸 만들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 사용대
상 소속공무원이라는 것은 1급관사는 교

육감이고 2급관사는 부교육감, 교육장,
청·소의 장이 직접 사용할 때는 임대료
나 이런 것을 면제해 주는데, 요 문구상
으로 보면은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사용
대상은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장, 청·
소의 장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거
고 그러니까 교육감하고 부교육감하고 교
육장하고 청·소의 장은 사용해도 사용료
를 내게 되어 있어, 그 대상소속 공무원
만이 면제되는 문구로 저는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왜 사용대상 즉 교육감, 교육감
외 도교육청 소속공무원이 교육감 소속공
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면제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구가 교육감하고 부교육
감 이런 사람은 면제를 못 받아 왜 소속
대상 교육감 소속공무원만 받는거지 교육
감은 못 받아 이 문구상으로 봤을 적에,
그래서 이거를 문구를 고치려면은 사용대
상공무원 및 사용대상공무원및 그러면 교
육감, 부교육감, 청·소의 장 들어가죠.

사용대상 공무원 및 그 사용을 허가받
은 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넣어
놓으면, 교육감이 사용하면 교육감이 면
제받고 교육감이 사용한해서 또 허가를
받은 그 밑에 소속공무원이 해도 면제를
받고 어떻습니까? 제 말이 누가 봐도 누
가 이 문구를 봐도 교육감은 못 받게 되
어 있어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니까 국장

님 어떻게생각하세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요것이 저희들도 입법을 하면서 사용대상 소속을 넣느냐 안넣느냐의 범위에 대해서 법제심의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입법한 취지로는 사용대상 소속공무원 속에 당사자를 포함한 직원까지를 소속공무원으로 보고 저희들이 입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규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물리해석만 쪽 한다면 언뜻 보기에 본인은 빠지고 사용대상인 나를 주체를 빼놓고 내 소속된 부하만을 쉽게 말하면 소속된 공무원만을 지칭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사용대상 공무원이 그러면 반드시 본인만 사용하는 걸로 봤고 사용대상 소속공무원 그러면 본인을 포함한 직원을 포함되는 걸로 봐서 저희들이 입법을 해서, 당초에 사용대상 공무원으로 할 것이냐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으로 할 것이냐 그러다 소속공무원으로 하는 것이 본인을 비롯한 많은 직원들이 활용하는데 면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소속으로 하자 이렇게 저희들은 지금 입법을 했습니다.

● 고규강 위원

아 글썄 그거는 알아요. 그 취지는 아는데 이 문구상으로는 국문학자나 국어학자들한테 누구한테 물어봐요. 소속대상 소속공무원 소속대상은 교육감이 되는데 소속공무원이 사용하는 게 면제되는 거지 본인 직접 1급관사에 살수 있는 교육감은 안되는 거예요. 안되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 이기수 위원

아니 아니 가만 있어 봅시다.

고부의장님 지금 말입니다. 52조에 지금 사용료의 면제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이래 갖고서 거기에 분명하게 이런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장, 청·소의 장, 시설관리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가 1호, 2는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은 시설보호, 감시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4는 공동숙사 및 면이하 지역에 근무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해 갖고서 1,2,3,4 면제대상을 분명히 못 받아 나서 그러니까 그런 법이라는 얘기는 어느 경우는 말입니다. 정확히 똑떨어지게 해놓을 경우도 있지만 좀 포괄적으로 해 갖고서 이게 분명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갖고서 각 호에 구체 조항으로 이렇게 명시해놨다면 우리 고부의장이 지적하는 그

[제151회-제3차 조례심사소위원회]

부분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면제조항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오해가 불식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고규강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시네.

개정안 현행은 다 이게 되어 있어 1급 관사는 교육감, 부교육감 이거를 없애고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걸로 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정을 할 적에 현행에 있는 거는 없어지니까 제 얘기는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니까 이걸 뭐 교육감이 사용대상이 아니에요. 1급관사는 소속공무원만 혜택을 받는 거지 대상자 교육감이 사용할 때를 돈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이 뜻이 누가 보더라도 왜 법이라는 것은 만인이 알 수 있게 해놔야 되는데, 어느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 사용대상이라는 것은 교육감관사는 교육감 밑에 공무원이 사용하는 것이지 교육감이 사용하게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조항이 그러니까 제 말은 그 문구를 좀 고치면 쉬운건데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건데 설명을 고쳐주면 되는 건데.....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고규강 위원님께서 문구를 해석하는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사용

대상 공무원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구분을 해서 표기를 하면 어떠냐 그런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 뜻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소속공무원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각 시·도 조례나 내부부 소속 일반단체의 조례가 행정자치부 당시에는 내무부에서 왔었겠습니까마는 그 당시 준칙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전부다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해서 법을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요것이 저희들이 그래도 이것을 입법하는 과정에서는 소속 속에는 본인을 포함한 산하 직원까지를 포함해서 요걸 입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시·도에 보면은 거의 소속 우리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도청도 소속공무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취지는 본인 플러스 소속직원 요렇게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도에 올라가면 도조례하고 같은 취지인데 표현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규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명쾌합니다. 그것만은 틀림없는데 법을 제정하는 도의회 쪽에서 볼 때는 똑같은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체 누구는 사용대상 공무원 및 소속공무원으로 했고 또 도청 것은 소속공무원으로 이렇게 표기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다.

그래서 이해만 해주신다면 저희들이나 일반 여러 가지 타 시·도 교육청 또 일반 시·도에서 조례로 되어 있는 용어를 그냥 써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 **고규강 위원**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서울이나 소속공무원 대상 그거를 썼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하는게 그 문구가 좋지 않느냐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 생각 발상이 잘못 됐어요.

왜 그러냐 법이라는 것은 확고하게 분명하게 여기다 집어넣어 줬을 적에 어떠한 건이 어떠한 뭐가 벌어지더라도 그 법 조항에 의해 가지고 해결이 되지, 이렇게 막연하게 해서 만약에 교육감이 사용하는 거는 안되니까 임대료 안내느냐 우리가 또 제3자가 이것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런 소지 어떤 소지의 여유를 남겨 두느냐 이 말이야 분명하게 해줘야지 그러면 교육청이 편할거를 다른데서 그렇다고 다른데 무슨 상관 있습니까?

잘못된 사항을 법을 모르니까 그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그것을 집어넣어 주세요. 분명하게 하는게 좋지.

● **진옥경 위원**

진옥경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관련한 부수적인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기 입법예고라는 것이 절차가 있죠.

그런데 그 입법예고의 절차와 그 기간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공유재산에 관한 입법예고가 도보, 회보, 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이렇게 지금 나와있는데 도보라는 것은 충청북도에서 발행하는 것입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예. 맞습니다.

● **진옥경 위원**

회보는 어디에서 나오는.....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회보는 공문의 성격을 가진 여러 가지 사항을 모아가지고 학교에 여러 가지 문건을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내보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입법예고의 기간하고 도보나 회보의 발행기간이 다를 수 있지 않나요? 그런 경우들이 없나요? 그러니까 충분한 입법예고 기간이 지켜지는지.....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입법기관과 절차 이런 것이 방법 다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서 20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도보에 게재하는 것은 매주 목요일

[제151회-제3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일인가 해당되는데 그 발행일을 시점으로 해서 20일간을 산정합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인터넷홈페이지만을 이용해서 입법예고하고 계시나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예. 도보도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하고 있고 회보도 저희가 발행을 하고 도교육청에서 하고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도보와 회보를 전부 발행하고 계시나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도보는 도청에서 하는 겁니다.

● 진옥경 위원

이게 지금 충분한 입법예고의 어떤 범위가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이거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관리재산, 재산관리에 관련한 분들이 이해당사자가 특정한 어떤 이해당사자일 경우에는 관심있게 지켜보겠지만, 일반학생이라든지 이렇게 광범위한 사람들이 어떤 조례안이 지금 이제 개정되어야 되면서 자기네들의 이해와 관계가 되는지를 홈페이지만을 살펴보고 있다가 한다는 것은 너무 범위가 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교육단체라든지 이런데서 수시로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이것이 입법예고의 참된 의미가 있는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진옥경 위원님께서 지금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용자들이 수익자 분들이 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고를 주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절차법에 보시면 도보에 우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청에서 발행되는 도보에 20일 이상 저희들이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홈페이지에도 했는데 이것이 다만 주로 수익자들이 교원들내지는 우리 일반 행정공무원들로만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분들이 직접 관사를 사용하시분 이외에는 진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이걸 주의깊게 보지 않았거나 또 쉽게 접해보지 않았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무한정 공고를 할 수도 없고 또 예산의 한계도 있고 해서 주로 관보나 저희들이 보내는 회보가 있습니다. 각 학교에 회보에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도청에서 발행하는 도보에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앞으로도 그런 방법으로 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 진옥경 위원

왜냐 하면 이게 학생이나 학부모들도 다 교육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지금 있어야 되는데, 교육행정이나 교사들만이 이것들을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것은 구시대적인 그런 생각이라고 보고, 사실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입법예고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질문 드렸습니다. 좀 참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교관사에 관련한 부수 질문인데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사용대상소속공무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어떤 우선 순위로 관사는 한정되어 있고 그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으실 텐데 그 순위는 어떻게 정하십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교육감하고 부감은 1급관사, 2급관사로 딱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그건 별개로 하고, 주로 학교에 있는 관사는 주로 교장선생님들까지가 지정되어 있고 그 외에 일반직원들이 관사가 2개이상 됐거나 아니면 교장선생님들 관사를 일부 칸을 빌려서 들어가시는 경우 워낙 이런거는 학교 자체에서 교장선생님들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그것이 조금 결정하는 방법이 상이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얼마 전에 제가 교장선생님 말씀을 들었는데 교사가 먼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뒤늦게 부임하셨는지 못 들어가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이 무작위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혼란이 오지 않을까 그냥 사용공무원이라고 했을 때에 어떤 우선 순위나 발령순서라든지 아니면 그래도 직급의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조례는 아니더라도 뭔가 규정이 정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학교장이 교육감 재산을 관리위탁 쉽게 말하면 관리자로 지정이 되어서 학교장이 학교의 시설을 관리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교실을 몇학년 몇반을 줄 것이냐 또 그 관사는 누가 살 것이냐 이런 거를 여기서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진위원님 말씀하신 사례가 종종 일어나요. 한 겨울에 발령이 났는데 교장선생님 가려고 보니까 직원이 살고 있더라 그렇게 되면 당분간은 불편하시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함에 있어서 그런 일 가

급적이면 없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는 교장선생님이 의사결정을 하시는 과정에서 선생님들 의사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 다음에 지금 매각대금 인하 이런 거 임대료 같은 것들을 못 받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어떤가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 회계중에서 미수금이 있는데 보편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되는지요, 지금.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관사에 관련되어서는 미수금이 없고 일반적인 임대료라든지 매각대금의 미수가 일부 있습니다.

특히 현재에 미납된 게 보은 쪽에 하나가 있고 임대료입니다. 요것은 사무 체납하다가 행방불명이 되어 가지고 체납된 금액이 180만원 됩니다. 그런 것이 한 두 건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 진옥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송대현

송대현 위원입니다.

청주교육장 관사가 있습니다. 그게 비어서 관내 교장 중에서 관사가 없는 사람이 희망했을 때 들어갈 수 있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현재는 지금 관사를 입주률 누가 하나냐의 규정은 지금 1급관사, 2급관사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청주시 교육장님께서 내가 청주에 집이 있기 때문에 관사에 입주하지 아니하겠다 할 경우에 교장선생님한테 허가를 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 간사 송대현

그때 급수를 조정합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급수 조정 안합니다. 교육장님 관사부터는 급수를.....

● 간사 송대현

교육장님 관사를 급수조정을 안하고 교장이 곧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급수는 지금 1급관사, 2급관사만 있거든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교육장관사는 지금 현재 2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조금 연구과제로 해야 되겠는데요. 실제 입주자에 따라서 그러나 언뜻 깊이 있게 생각 못했습니다마는 그 관사의 격을 입주자에 따라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 김남훈 위원

제가 알기는 관사의 급수가 1급이다 2

급이다 있을 경우에는 그 급수에 해당되는 교육장이라든지 교육감이 들어갔을 때는 거기에 준하는 수도세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면제되어 왔습니다. 주류세라든지 월동비 그런데 다만 그 교육감이나 교육장이나 본인이 들어가서 않고 소속공무원이 들어갈 때는 그러한 면제혜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살수는 있는데 그런 혜택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 간사 송대현

소속공무원이 고치는 거 아닙니까? 개정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장님이 관내 교장도 소속공무원으로 봐서 교육장 관사가 청주교육장 같은 경우 그런 예가 있어요. 뭐 집이 있으니까 거기 굳이 들어갈 필요 없고 비어 있으니까 빈 것 관사관리 하느라고 애를 먹습니다.

그런데 마침 교장선생님 가운데에 집이 없는 분들이 더러 있거든요. 객지에 와서 있는 분이 희망을 한다고 할 적에 지금 개정을 하는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에 준해서 그 분들도 사용료를 다 안내는거 아니겠는가 나는 이렇게 광의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 해석을 여쭙보는 겁니다.

그리고 급수조정 관계도 교육장관사 2급으로 되어있어요. 과거에는 급수가 다르니까 못 들어간단 이거예요. 급수가 다르니까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털어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왕 손질 할 바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보는 겁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송대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처음에 초장에 답변을 2급관사 부분을 말씀을 잘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연구를 해서 상호간에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어떻게 조정하는 방법을 신중히 검토해보겠습니다.

● 간사 송대현

다만 유권해석에 지금 사용대상 소속공무원 교육장관사입니다. 관내 교장을 해석의 범주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 부분은 말씀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송대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상당히 구체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조례상으로는 그게 명쾌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1급관사, 2급관사, 3급관사는 주로 기관장님급들을 지정해 났는데 같은 기관장이라 하더라도 교육장님은 3급관사의 범위에 안 들어갔었는데, 다행히 3급관사의 기관장이 비어 있는 집을 관리상

[제151회-제3차 조례심사소위원회]

부득이 교장선생님이 갈 경우에 따르는 면제조항들 여러 가지 납부혜택이 교장들까지 주어야 되는 문제, 그거는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조례상이나 아니면 규칙상 정해져 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하되 제가 생각할 때는 입법취지 상으로 볼 때에는 교육장까지는 그래도 면제의 대상이 되는 3급관사로 인정해 주고, 또 조례에 있다하더라도 교장선생님이 갈 경우에는 그것을 일반 교장선생님 관사와 같은 혜택을 줘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같은 교장선생님들이 여러분 계신데 교육장관사는 딱 한채밖에 없는데 거기 딱 들어가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거기 안들어간 절대 다수의 교장선생님들하고는 차별을 두어서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기수 위원

지금 말입니다.

단양같은데나 제천같은데 선생님들한테 아파트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숙소 거기는 임대료 냅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그거는 내지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공동숙사라는 개념으로 해서 한집에 공동숙사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하나에 두분 세분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하는 거 또 연립주택형 이런 것을 공동숙사라고 합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숙소 공동숙소로 해갖고 숙소이용료는 안내고 전기도 수도세는 본인이.....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그런 거는 사용자부담입니다.

● 이기수 위원

사용자 부담이고 그리고서 관리국장님 말씀했던 대로 관사사용에 대해서 소속공무원 들어갔을 때 면제조항이 있으면 그걸 같이 생각해줘야 될 것 같은데 조례 나갈 때 그래야만이 얘기되지 면제한다고 해놓고서 그 다음에 교육장관사 속에 교장들어가고 다른 교장은 안들어갔다고 그래서 그걸 다시 고려한다면 조례입법취지 하고서 안맞는 얘기 같아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본래 지금 조례가 원칙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처음 관사 보유수가 530동입니다. 그 중에서 읍이하 지역에는 현재까지 면제를 다 해왔습니다. 현재 조례로 그런데 48동인 9%입니다. 48동만 면제를 안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시지역에 주로 있지 않습니까? 관사에 청주시에 있거나 제천이나 아니면 읍지역 이상에 와

있는 기관장님들은 청주에서 같이 교장발령이 나가지고 제천이나 단양에 가가지고 관사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물론 교장 선생님은 아니고 일반직원들이 그런데 그 제천지역에 가서도 제천시내에 가서 근무하더라도 객지거든요. 여기서 근데 거기서 조금 시를 벗어난 면지역도 객지고 그런데 면이라고 해서 면제를 해주고 시라고 해서 받다 보니까 9%의 인원을 지금 같이 교원들을 우대해주고 생활을 보장해주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교육청만 유달리 이거를 그렇게 심하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풀은 거고, 지금 송대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조금 개념이 틀려요. 관사가 530개도 모두 똑같은 관사가 아니고 평수라든가 관리면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가서 살수 있는 대상자가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그게 교육장님하고 부교육감님하고 교육감님에 대해서는 그래도 1,2급으로 분류를 해서 그분들은 사실 사생활보다는 공직자로서의 공무에 더 좀 많은 일을 하는 걸로 봐가지고 면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1급관사 하나하고 2급관사가 교장선생님들이 사시는게 2급관사인데 현재 실질적으로 이분들도 생활비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생활비나 이런 거는 들어가는데 다만 아까 김남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화료든가

전기료든가 이런 그것을 항목별로 정해서 1급관사는 어디까지 면제해주고 2급관사는 어디까지 면제해준다 그것이 조금 있는데, 물론 일반직원들하고의 형평성까지 거론해서 전부 다 면제를 해주면 좋습니 다마는 현재까지 우리 조례가 발전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1급관사, 2급관사는 종전대로 일정한 수준은 면제를 해주고 일반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임대료는 면제를 해주는 반면에 생활비는 자기들이 대야되지 않겠느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 해 그런 생각입니다.

● 김남훈 위원

저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관사얘기가 나왔는데 1급, 2급이라고 하는 것은 도단위 조례로다가 결정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에는 시행령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준칙인가 뭔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제까지는 단독관사에 사는 선생님들에 한해서는 임대료를 받았어요. 그것만을 면제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 김남훈 위원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제151회-제3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지금 교육장관사에 교육장이 들어가서 살지 않을 경우에는 제3자가 들어갈 때에는 그 교육장관사에 사는 2급관사에 준하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일반관사에 들어가서 사는 것 같이 똑같이 임대료만 면제해주고 혜택있는 사항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교육장이 관사에 들어가지 않고 내집에서 다닌다고 하면 교육장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전혀 못받아요.

● 간사 송대현

제가 혜택을 아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급수가 달라서 그런 부분도 손을 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비어 놓고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그런 문제는 사실 조례에 대신해서 들어갈 수 있는 문제까지 열거하기에 조금 어려운 문제이고 운영상에서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간사 송대현

관사 이야기가 나와서 거기까지도 앞으로 유념하시라고 그런 겁니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예.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영웅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잠시 정회하여 본 조례안 의결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 위원장 성영웅

좌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담회 협의결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52조1호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사용대상 공무원 및 그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수정하고 기타부문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질의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조례심사소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성영용, 간사 송대현,

위 원 고규강, 김남훈, 이기수,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5명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총무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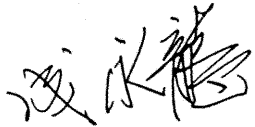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시설과장 안세열.

제15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조례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3. 4. .

위원장

성영용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제15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03.03.25. (화) 본회의 종료후~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03.03.26. (수) 11:00~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	
'03.03.28. (금) 14:00~	[제3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